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298호 2013. 3. 6(수)

<b>조 례</b>	
○ 사천시 조례 제1030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03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사천시 조례 제1032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사천시 조례 제1033호 사천시 향촌 삼계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	10
○ 사천시 조례 제1034호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 사천시 조례 제1035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33
<b>규 칙</b>	
○ 사천시 규칙 제527호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	82
○ 사천시 규칙 제528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4
○ 사천시 규칙 제52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5
○ 사천시 규칙 제530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97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

##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265호 사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99
- 사천시 훈령 제266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 113
- 사천시 훈령 제267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 188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3-3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213
- 사천시 고시 제2013-3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 고시 ----- 215
- 사천시 고시 제2013-35호 구암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사업기간)  
승인·고시 ----- 217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3)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03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31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면에”를 “읍·면에”로 하고, 제2항 중 “의료취약지역에”를 “보건의료취약지역에”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3항 중 “보건진료원”을 각각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4호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별표 1 중 사천읍 북사동 보건진료소의 소재지 “웅동길 17”을 “웅동길 13-5”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4)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사천시보건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 일원
사천읍보건지소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사천읍 일원
정동면보건지소	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 2504	정동면 일원
사남면보건지소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08-1	사남면 일원
곤양면보건지소	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20	곤양면 일원
곤명면보건지소	사천시 곤명면 곤수로 18	곤명면 일원
서포면보건지소	사천시 서포면 나분이길 66-12	서포면 일원
삼천포보건센터	사천시 동금로 33(동금동)	동 일원
사천읍북사동 보건진료소	사천시 사천읍 웅동길 13-5	두량 1·2·3·5·6리 장전 1·2리, 금곡리, 구암 1·2리
정동면소곡 보건진료소	사천시 정동면 소곡길 43	만마, 객방, 학촌, 소곡, 가곡, 감곡, 복상, 대산
사남면가천 보건진료소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261-7	우천, 능화, 가천, 종천, 소산, 연천, 사촌, 송암, 계양, 진분계, 대산, 구룡, 화전, 예의
용현면통양 보건진료소	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271	통양, 연호, 선진, 신촌, 종포, 신북, 평기, 신기
축동면반룡 보건진료소	사천시 축동면 내축로 229	반룡, 신촌, 관동, 용산, 용수, 상탑, 중탑, 하탑, 가산, 구호, 예동, 사다
곤양면검정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양면 검정1길 14	홍사, 검정, 가화, 동천, 목실, 와티, 안도, 점복개
곤양면본촌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양면 가리2길 20	본촌, 환덕, 목단, 한월, 고동포, 석문, 제민
곤명면봉계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명면 봉계길 64	오사, 추동, 용산, 조장, 원진, 오저, 초량, 신산, 성방
곤명면은사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명면 은사길 16	삼정, 은사, 옥동, 마곡, 송림
서포면금진 보건진료소	사천시 서포면 구송로 407	금진, 내구, 후포, 신흥, 굴포, 서구, 동구, 납구
서포면비토 보건진료소	사천시 서포면 비토로 312	비토, 선창, 염전, 아포
신수동 보건진료소	사천시 신수서길 1-9(신수동)	신수동 일원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5)

## 사천시 조례 제103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31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845명”을 “847명”으로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30명

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6)

[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 관련)

###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8% 이내	31% 이내	26% 이내	7% 이상

###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9% 이내	17% 이내	11% 이내	63% 이상

### 3. 연구·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50% 이내	50% 이상	-	-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7)

[별표 3]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847	-						
정 무 직 계		1	-						
단체장(시장)		1	-						
일 반 직 계		724	-						
4급		5	3	1	1				
5급		44	21	2	4	3	1	7	6
6급 이하 계		675	-						
별 정 직 계		4	-						
6급 상당이하 계		4	-						
연 구 직 계		1	-						
연 구 관		0							
연 구 사		1	-						
지 도 직 계		31	-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9	-						
기 능 직 계		86	-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8)

## 사천시 조례103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31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명하고”를 “명하거나”로 “휴업”을 “의무휴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9)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0)

## 사천시 조례 제103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향촌 삼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31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향촌 삼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사천시 향촌삼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사천시 향촌삼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이하 “폐수연계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
3. “폐수 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 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 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폐수연계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든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1)

6. “계량기”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 관거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최초사업자”란 폐수연계처리시설 준공일 현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 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8. “증설사업자”란 폐수연계처리시설 준공 이후 최초 사업자 이외의 오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폐수연계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방지사설업자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협회에 폐수연계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처리구역)**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천시 향촌삼재 농공단지 지정구역으로 한다.

**제5조(권리 의무의 승계)**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서 오폐수 배출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 소유자나 권리자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오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전에 별표 4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설비의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수설비를 폐수 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2)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그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고,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 등 그 밖의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배출업소로 오폐수 배출유량이 극히 적어 유량계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격 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2회 이상(반기 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용부담 계산업무상 필요하면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필요장치를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고, 고의로 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용개시 및 중지의 신고)** 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유입수질 및 최종연계배출수질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든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또는 대형 개·보수에 필요 경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3)

1. 최초사업자
2. 증설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계산기준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비 비용부담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③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계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 제13조에 따른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배출일로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계산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고지 전에 사업자와 납부총액 및 납부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① 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오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오폐수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17조(시설설치비의 재계산)** ① 시장이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와 협의 전에 제15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부과한 경우에는 재계산하여 환불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 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관리자가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시 계산된 오염부하량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계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사업자는 오폐수 처리에 드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4)

-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계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운영자는 처리시설 유지관리실적 자료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운영자는 제1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계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휴업 등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는 비정상 가동 직전 3개월간의 기본요금 평균치로 계산한다.

1. 월간 폐수 배출량으로 계산한 비용부담이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 방법에 따른 계산 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한 오폐수 배출사업자

**제21조(부담금 관리)** ① 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운영한다.

- ② 유지관리 부담금의 집행은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지출하고, 운영자는 그 집행사항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오폐수량의 계산)** ① 시장은 비용부담금 계산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오폐수의 배출량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되, 오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의 범위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 오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용수사용량과 종업원 등을 기준으로 추정 계산할 수 있고, 배출량의 계산 방식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 ③ 시장은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및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5)

한 방법으로 오폐수량을 계산한 경우에는 제품생산량과 용수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추정 계산할 수 있고,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추가 부담금)** 시장은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하거나 폐수 관거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장애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시장의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부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부담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부담금이 잘못 계산되었음을 발견하면 해당 월분 부담금을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⑤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 적용을 제외한다.

**제25조(가산금)**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6조(독촉)**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체납처분)** 시장은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8조(자료의 제출 등)** 시장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6)

**제29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에 따라 폐수 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용 제한을 할 때에는 15일 전에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30조(배수설비 등 미설치 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사업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배수설비, 유량계 등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폐수연계처리시설에 유입되면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오폐수량의 계산 방법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배출 중지처분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폐수관거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2조(특별회계 설치)**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7)

[별표 1]

## 시설설치비의 계산기준

□ 제13조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circ AS = FC \times \frac{LT - LO}{LT} \times \frac{KI}{KT} + \frac{LO}{LT} \times \frac{LI}{LO}$$

- AS : 입주사업장별 부담금
- FC : 최초사업자의 경우-처리장 설치 총공사비 중 입주사업장 부담금의 총액  
증설사업자의 경우-시설설치비의 총공사금액
- KT : 처리장의 준공시 총입주사업장 규모로서  
(0.2 × 부지 면적 + 0.8 × 건축면적 )
  - 부지 및 건축면적의 인정방법 :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상의 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등본상 면적이 실제와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기타 등재 되지 않은 경우 등 등본상 면적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실측조사 등의 방법으로 같음할 수 있다.
- KI : 해당사업장 규모 (0.2 × 부지면적 + 0.8 × 건축면적)
- LT : 처리장 설계 오염부하량(전 입주사업장의 오·폐수 배출 총부하량)
  - ( $\frac{BOD+COD}{2} + 1.3 \times SS$ ) × Q : 오폐수 배출 총부하량
- LO : 처리장설계 폐수 오염부하량(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총폐수부하량)
- LI :
  - ┌ 최초사업자의 경우 : 처리장 설계상의 업소별 폐수 배출오염 부하량
  - └ 증설사업자의 경우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신고서에 기재된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내역서에 의한 일평균 폐수량 및 일평균 농도로 산출하여,
    - 산출공식은 : ( $\frac{BOD+COD}{2} + 1.3 \times SS$ ) × Q
- KT, KI 산정시 단위 m<sup>2</sup>기준으로 소수점 2자리이하 절사
- LT, LI 산정시 단위 g기준으로 소수점 2자리이하 절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8)

[별표 2]

## 유지관리비의 계산기준

□ 제1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계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o AS = aM \underbrace{\frac{QI}{QT}}_{\text{기본요금}} + bM \left( c \underbrace{\frac{QI}{QT}}_{\text{---}} + d \frac{CI}{CT} + e \frac{SI}{ST} + f \frac{NI}{NT} + g \underbrace{\frac{PI}{PT}}_{\text{처리요금}} \right)$$

·AS : 사업장별 부담금(월간)

·M : 월간 유지관리비

-처리장 운영을 위한 1개월간의 유지관리비를 산출하되 직접경비·간접경비 및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 직 접 경 비 : 처리장 운영 예산에서 집행된 월간 총비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외)

└ 간 접 경 비 : 직접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감가 상각비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Q : 오·폐수 배출량으로써

-QT : 전체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배출량

-QI : 개별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배출량

·C : BOD, COD 부하량의 평균으로써

$$C = \frac{BOD+COD}{2} \times Q$$

- CT : 전체사업장의 BOD, COD 부하량의 평균치 합계

- CI : 개별사업장의 BOD, COD 부하량의 평균치 합계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9)

- S : SS 부하량으로써
    - ST : 전 사업장의 SS부하량
    - SI : 개별사업장의 SS부하량
  - N : T-N 부하량으로써
    - NT : 전 사업장의 T-N부하량
    - NI : 개별사업장의 T-N부하량
  - P : T-P 부하량으로써
    - PT : 전 사업장의 T-P부하량
    - PI : 개별사업장의 T-P부하량
- o a, b, c, d, e, f, g : 농공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시켜야 할 산출계수

a : 기본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left( = \frac{\text{기본요금}}{\text{유지관리비}} \right)$$

b : 처리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left( = \frac{\text{처리요금}}{\text{유지관리비}} \right)$$

c : 처리요금중 유량에 대한 배분율

$$\left( = \frac{\text{유량배분요금}}{\text{처리요금}} \right)$$

d : 처리요금중 BOD, COD 부하에 대한 배분율

$$\left( = \frac{\text{BOD, COD 부하배분요금}}{\text{처리요금}} \right)$$

e : 처리요금중 SS부하에 대한 배분율

$$\left( = \frac{\text{SS부하 배분요금}}{\text{처리요금}} \right)$$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0)

f : 처리요금중 T-N부하에 대한 배분을

$$\left( = \frac{\text{T-N부하 배분요금}}{\text{처리요금}} \right)$$

g : 처리요금중 T-P부하에 대한 배분을

$$\left( = \frac{\text{T-P부하 배분요금}}{\text{처리요금}} \right)$$

(참고) 세부 계산방법

가. 사업장별 폐수량 및 오염부하(BOD, COD, SS, T-N, T-P)의 적용

- 폐수배출 사업장은 적산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폐수량을 산정 적용한다.
- 배출폐수의 오염부하량은 정기적으로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농도를 적용하여야 하고, 분석시기·회수 등은 입주사업장 대표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최대 발생폐수량(설치계획 최대량)을 적용한다.
- 극히 소량의 폐수를 배출하여 유량계 설치에 의한 유량산정 및 폐수 채취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동종 사업장의 폐수발생 원단위를 적용한다.

나. 사업장별 오수량 및 오염부하(BOD, COD, SS, T-N, T-P)의 산정

- 전체 오수의 배출량 및 오염부하는 공동 오·폐수처리장 유입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에서 전체 배출량 및 그 오염부하량을 감한 값으로 한다.
- 사업장별 오수배출량 및 오염부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전체 오수량  $\times \frac{\text{사업장별 생활용수 사용량(수도사용량)}}{\text{농공단지 전 생활용수 사용량(수도사용량)}}$  또는
  - 전체 오수량  $\times \frac{\text{사업장별 종업원수}}{\text{농공단지 전 종업원수}}$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1)

다. 기본요금 및 처리요금의 배분율(a, b)

구 분	내 용	배 분 율
유지관리비	기본요금+ 처리요금	a+ b=1
기본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 현장관리인 인건비</li> <li>· 후생복지비</li> <li>· 사무관리비 :인건비 × 5%</li> <li>· 동력비중 기본요금</li> <li>· 감가상각비</li> <li>· 하수도 기본요금</li> </ul>	$a = \frac{\text{기본요금}}{\text{유지관리비}}$
처리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력비 중 사용요금</li> <li>· 약품비</li> <li>· 오니 처분비</li> <li>· 시설유지 보수비</li> <li>· 하수도 요금중 사용요금</li> </ul>	$b = \frac{\text{처리요금}}{\text{유지관리비}}$

○ 기본요금 및 처리요금의 내용구분은 상기 기준에 의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사업장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a, b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각 항목별 비용은 한국환경공단과 협의.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2)

라. 처리요금 중 유량과 BOD, COD부하 및 SS, T-N, T-P부하에 대한 배분율  
(c, d, e, f, g)

구분	내 용	배 분 율
처리요금	다음 각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운전요원 및 보조원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보수비, 하수도요금 중 사용료, 동력비중 사용료, 약품비 및 오니 처분비의 합계	$c + d + e + f + g = 1$
유량배분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실</li> <li>· 침사지, 유입펌프장, 압송펌프장</li> <li>· 최초 침전지</li> <li>· 관리 등</li> <li>· 변전소 및 계장설비</li> <li>· 조경 및 부대공사</li> </ul>	$c = \frac{\text{유량배분요금}}{\text{처리요금}}$
BOD, COD부담 배분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버킷스크린</li> <li>· 가압부상조</li> <li>· 전기응집부상조, 사여과기 등</li> </ul>	$d = \frac{\text{BOD, COD부하배분요금}}{\text{처리요금}}$
SS부하배분 요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압부상조</li> <li>· 전기응집부상조, 사여과기 등</li> <li>· 오니저류조</li> <li>· 오니 탈수기 등기타</li> </ul>	$e = \frac{\text{SS부하배분요금}}{\text{처리요금}}$
T-N부하배분 요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압부상조</li> <li>· 전기응집부상조, 사여과기 등</li> </ul>	$f = \frac{\text{T-N부하배분요금}}{\text{처리요금}}$
T-P부하배분 요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압부상조</li> <li>· 전기응집부상조, 사여과기 등</li> </ul>	$g = \frac{\text{T-P부하배분요금}}{\text{처리요금}}$

- c, d, e, f, g의 배분율은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예산서 및 도면에 의해 산정한 값을 사업장 대표자와 협의 후 정한다.
  - 상기 시설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기능별로 분리하여 해당 항목에 적용한다.
- ※ 기타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 산출방법에 필요한 자료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의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3)

[별표 3]

## 사천시 향촌삼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입수질 및 최종연계배출수질 기준

(단위:mg/L)

구 분	유입수질	최종연계배출수질	비고
BOD	2,800 mg/L	580 mg/L	
COD	1,100mg/L	455 mg/L	
SS	880 mg/L	164 mg/L	
T-N	280 mg/L	130 mg/L	
T-P	45 mg/L	13 mg/L	

※ 페놀류 등 유해물질 전처리기준 Cd, Pb, Cu, Zn 등 유해물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페놀류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나”지역의 배출기준과 동일하게 배출(총인, 총질소 제외)하여 삼천포 하수공공하수처리시설로 최종 연계처리 함.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4)

[별표 4]

##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 구조기준 등

1. 배수관의 관경은 내경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 종점 · 합류점 · 굴곡점과 관경(管徑) · 관종(管種)이 달라지는 지점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 맨홀 등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방취(防臭)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업장에서 폐수연계처리시설까지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폐수연계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6)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신고서					
신 고 인	상호 및 명칭				
	성명(대표자)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설치년월일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 「향촌삼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left;">사 천 시 장 귀하</p>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7)

[별지 제3호서식]

## 시설설치부담금 대상 신고서

신 고 인	상호 및 명칭			
	성명(대표자)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배수설비사용개시일				

사천시 「향촌삼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8)

[별지 제4호서식]

**납부고지서**  
(   년   분기)  
시설설치부담금

**납부영수증**  
(   년   분기)  
시설설치부담금

**납부영수필통지**  
(   년   분기)  
시설설치부담금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금액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후금액	
납부기관	사천시금고
세입과목	
부담근거	
부과일시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향촌 삼재 폐 수연계처리시설 설치비 상환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사 천 시 장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금액	
납기기한	년 월 일
납기후금액	
납부기관	사천시금고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수납은행	(인)
	귀하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금액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후금액	
납부기관	사천시금고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은행	(인)
	사천시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9)

[별지 제5호서식]

## 유지관리비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납부고지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금액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후금액			
납부기관	사천시금고		
세입과목			
부담근거			
수량	BOD	COD	SS
m <sup>3</sup> /일	mg/l	mg/l	mg/l
	T-N	T-P	
	mg/l	mg/l	
상기와 같이 향촌삼재 농 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 지관리비 부담금을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div>			

## 영 수 증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금액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후금액		
납부기관	사천시금고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		

## 영수필통지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금액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후금액		
납부기관	사천시금고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 하 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31)

## 사천시 조례 제103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31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를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를 “「국민건강보험법」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통합정보시스템 전자민원서비스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는 감면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32)

제12조제3항 중 “각호의 1에 의한다.”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정 전염병” 을 “법정 감염병” 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3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사천시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33)

## 사천시 조례 제103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5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34)

- 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으로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한 높이 4미터 미만의 애드벌룬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천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35)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른 회사 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다른 회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36)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37)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와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 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드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38)

업자로 지정하는 등 성과보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사항

**제12조(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천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건축과장, 도로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사회복지과장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광고물 등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39)

1.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돌출간판의 세로규격이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사항 중 표시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40)

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 기준 등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사 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41)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⑥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가벼운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바로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게시기간 등)**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지정계시대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1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한다. 다만, 종료일로 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수 있다.

- ②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42)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이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확인서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43)

② 시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이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44)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내주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 수료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용 등을 시장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시장은 위탁한 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추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⑨ 시장이 옥외광고업 종사교육을 위탁받은 자를 점검하여 법령, 조례 및 관리계획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고, 새로이 위탁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45)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 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 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광고물 명예감시요원)** ① 시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여 도시미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고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의 설치 기관 및 관리주체에 종사하는 사람
2. 옥외광고협회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명예감시원증을 발급 한다.

③ 광고물 명예감시요원은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단속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광고물 명예감시요원의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아 완성된 행정행위는 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46)

[별표 1]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20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b>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과 공연간판</b> 1)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3.1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4.1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45만원 2)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55만원 - 6.1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이하 65만원 - 7.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75만원 - 8.1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이하 85만원 - 9.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95만원 3)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제곱미터 이상 12.0제곱미터 이하 110만원 - 12.1제곱미터 이상 14.0제곱미터 이하 130만원 - 14.1제곱미터 이상 16.0제곱미터 이하 145만원 - 16.1제곱미터 이상 18.0제곱미터 이하 165만원 - 18.1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미만 185만원 4)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0만원+ 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b>나. 돌출간판</b> 1)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3.1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4.1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49만원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47)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p>2)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li> <li>- 6.1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이하</li> <li>- 7.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li> <li>- 8.1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이하</li> <li>- 9.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li> </ul> <p>3)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제곱미터 이상 12.0제곱미터 이하</li> <li>- 12.1제곱미터 이상 14.0제곱미터 이하</li> <li>- 14.1제곱미터 이상 16.0제곱미터 이하</li> <li>- 16.1제곱미터 이상 18.0제곱미터 이하</li> <li>- 18.1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미만</li> </ul> <p>4)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p>	<p>55만원</p> <p>65만원</p> <p>75만원</p> <p>85만원</p> <p>95만원</p> <p>110만원</p> <p>130만원</p> <p>150만원</p> <p>170만원</p> <p>190만원</p> <p>200만원+ 총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p>
<p><b>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b></p>	
<p>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제곱미터 이하</li> <li>- 0.6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이하</li> <li>- 1.1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li> <li>-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li> </ul> <p>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제곱미터 이상 3.5제곱미터 이하</li> <li>- 3.6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이하</li> <li>- 4.1제곱미터 이상 4.5제곱미터 이하</li> <li>- 4.6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li> </ul>	<p>30만원</p> <p>35만원</p> <p>40만원</p> <p>48만원</p> <p>55만원</p> <p>65만원</p> <p>80만원</p> <p>95만원</p>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48)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6.1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이하 - 7.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8.1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이하 - 9.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4)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연면적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b>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b>	
1)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 - 3.1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이하 - 4.1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2)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6.1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이하 - 7.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8.1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이하 - 9.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3)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1제곱미터 이상 12.0제곱미터 이하 - 12.1제곱미터 이상 14.0제곱미터 이하 - 14.1제곱미터 이상 16.0제곱미터 이하 - 16.1제곱미터 이상 18.0제곱미터 이하 - 18.1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49)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p>4)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제곱미터 이상 25.0제곱미터 이하</li> <li>- 21.1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이하</li> <li>- 30.1제곱미터 이상 35.0제곱미터 이하</li> <li>- 35.1제곱미터 이상 40.0제곱미터 이하</li> <li>- 40.1제곱미터 이상 45.0제곱미터 이하</li> <li>- 45.1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li> </ul> <p>5)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p>	<p>210만원</p> <p>230만원</p> <p>245만원</p> <p>260만원</p> <p>280만원</p> <p>290만원</p> <p>300만원 + 총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p>
<p>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p>1) 선전탑, 아치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li> <li>- 연면적 6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이하</li> <li>-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li> <li>- 연면적 15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li> <li>-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li> </ul>	<p>30만원</p> <p>50만원</p> <p>60만원</p> <p>70만 원</p> <p>70만원+ 연면적 2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드벌룬(공) 1개</li> <li>- 애드벌룬(공) 2개</li> <li>- 애드벌룬(공) 3개 이상</li> </ul>	<p>30만원</p> <p>60만원</p> <p>80만원+ 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50)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p><b>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b></p> <p>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30만원</li> <li>- 연면적 6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이하 50만원</li> <li>-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 60만원</li> <li>- 연면적 15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70만원</li> <li>-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80만원+ 연면적 2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 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li> </ul> <p>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따름</p> <p>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따름</p> <p>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의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따름</p>	
<p><b>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b></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따름</p>
<p><b>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b></p> <p>1) 비행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150만원</li> <li>-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50만원+ 연면적 1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li> </ul> <p>2) 그 밖의 교통수단</p> <p>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제곱미터 이하 10만원</li> <li>- 1.1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20만원</li> <li>-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29만원</li> </ul>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51)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이하 - 4.1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35만원 45만원 50만원+ 연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 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 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52)

[별표 2]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 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옥 외 광 고물 등 관리법 제·개 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 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53)

[별표 3]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 수 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제곱미터 이하	3,000원
- 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제곱미터 이하	30,000원
- 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제곱미터 이하	2,000원
- 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제곱미터 이하	15,000원
- 연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 표지 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 등(개당)	4,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 간판 1)과 같음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54)

광고물 등	수 수 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 간판에 따름 지주 이용 간판에 따름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55)

광고물 등	수 수 료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하. 벽보(1건)	3,000원
거. 전단(1건)	3,000원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56)

광고물 등	수 수 료
<p>너.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p>	<p>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 료의 2배 적 용</p>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57)

[별표 4]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제곱미터 이하	14,000원
	- 연면적 6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20,000원
	-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하	14,000원
	- 연면적 3.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21,000원
	- 연면적 50제곱미터 초과 70제곱미터 이하	38,000원
	- 연면적 7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14,000원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20,000원
	-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800원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58)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따름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따름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가로형 간판에 따름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 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따름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59)

[별표 5]

##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60)

[별표 6]

## 과태료 부과기준

(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61)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연면적 3제곱 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 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이하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연면적 10제 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의 1제곱미터당 15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62)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p>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p> <p>다. 벽보</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li>- 21장 이상</li> </ul>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li>- 21장 이상</li> </ul>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li>- 21장 이상</li> </ul>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li>- 21장 이상</li> </ul> <p>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p> <p>가. 30일 이상 90일 미만</p> <p>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p> <p>다. 180일 이상 1년 미만</p> <p>라. 1년 이상</p>	<p>법 제20조제1항 제2호</p>	<p>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p> <p>장당 17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42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33천원</p> <p>장당 50천원</p> <p>장당 8천원</p> <p>장당 17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33천원</p> <p>장당 50천원</p> <p>67만원</p> <p>117만원</p> <p>217만원</p> <p>400만원</p>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63)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 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 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 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 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 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 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64)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 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6.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본 교육 및 보충 교육 불참 시 각 1회 불참으로 본다.
-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 원 미만은 버린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66)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 . . 까지  
사 천 시 장

- 현수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67)

[별지 제3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	----------

신청자	성명	성별 남 ( ) 여 ( )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 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사 천 시 공 보

제298(68)

[별지 제4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	--

수탁자	성명	성별 남 ( ) 여 ( )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69)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쪽 >

목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사진 (3.5×4.5)
사 천 시

< 뒤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자 격 기 한( 20 . . . . ~ 20 . . . . ) 「목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 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일                    년                    월
사 천 시 장 직인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70)

[별지 제6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성명	성별 남 ( ) 여 ( )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_\_\_\_\_ 직위(직명)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71)

(뒤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 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 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폐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변동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 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74)

[별지 제9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남 ( ) 여 ( )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남 ( ) 여 ( )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76)

[별지 제11호서식]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확인서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성별 남 ( ) 여 ( )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78)

[별지 제13호서식]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성별 남 ( ) 여 ( )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79)

[별지 제14호서식]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	----------

신청자	성명	성별 남 ( ) 여 ( )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80)

[별지 제15호서식]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성별 남 ( ) 여 ( )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 20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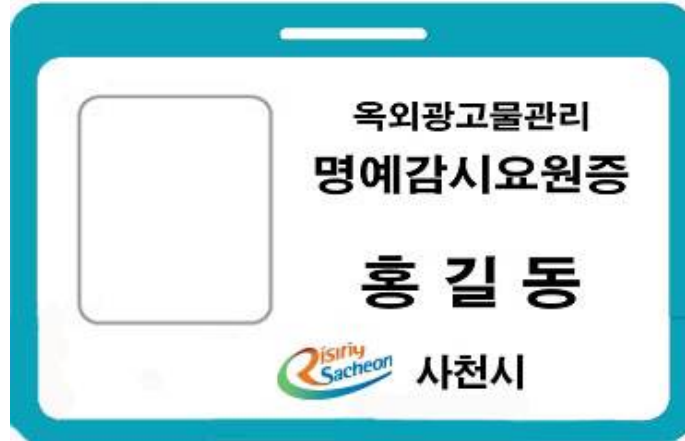


# 사 천 시 공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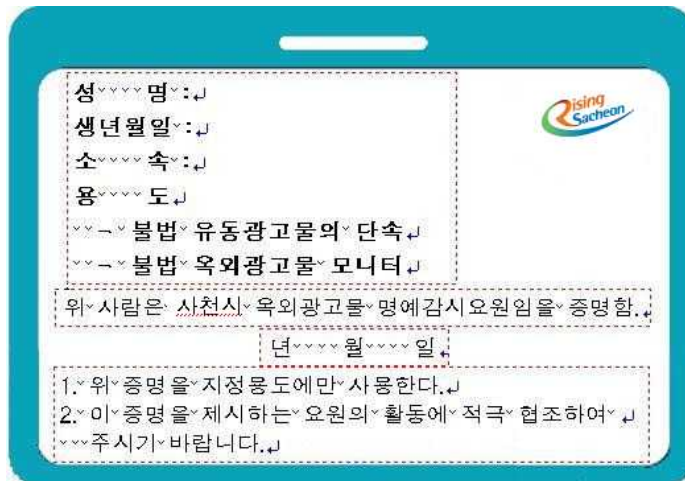
제298호(81)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뒷면)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82)

##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527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31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에게 5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단, 재택근무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를 “제4조에 따른 당직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재택근무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평일숙직 : 50,000원
2. 일직, 휴무일·공휴일 전일 숙직 : 70,000원” 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1인당” 을 “1명당” 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1대” 를 “한 대” 로 한다.

제31조 제1항 중 “2인” 을 “2명” 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83)

제39조 제2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2는 2013년 1월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84)

## 사천시 규칙 제52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31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지소”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보건지소”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④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85)

## 사천시 규칙 제52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31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86)

[별표]

##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847	464	17	129	43	22	100	72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724	409	12	89	33	22	93	66	
4급	소계	5	3	1	1					
	행정	3	2	1						
	기술	1			1					
	행정+ 기술	1	1							
5급	소계	44	21	2	4	3	1	7	6	
	행정	11	7	2					2	
	시설	2	2							
	행정+ 사회복지	1	1							
	행정+ 농업	3						1	2	
	행정+ 해양수산	2	1						1	
	행정+ 시설	8	7						1	
	행정+ 방송통신	1	1							
	농업+ 농촌지도관	1			1					
	행정+ 환경+ 보건	1	1							
	행정+ 농업+ 녹지	2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87)

직렬별		기관별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본청							
	행정+ 농업+ 시설	5					1	4		
	행정+ 공업+ 시설+ 보건	1				1				
	공업+ 보건+ 환경+ 시설	1				1				
	행정+ 농업+ 해양수산+ 시설	1						1		
	행정+ 보건+ 의료기술+ 간호	1			1					
	행정+ 환경+ 시설+ 보건	1				1				
	행정+ 보건+ 간호+ 의무	1			1					
	행정+ 농업+ 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02	115	3	29	10	5	28	12	
	행정	51	44	2		2			3	
	세무	1	1							
	사회복지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2	2							
	시설	12	10			2				
	보건진료	10			10					
	행정+ 세무	12	8					1	3	
	행정+ 사회복지	14	9					3	2	
	행정+ 전산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88)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 농업	7			1		2	4		
	행정+ 공업	1	1							
	행정+ 녹지	1	1							
	행정+ 보건	4			4					
	행정+ 시설	18	16	1			1			
	행정+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 환경	1	1							
	보건+ 간호	4			4					
	공업+ 환경	1				1				
	농업+ 농촌지도사	1			1					
	행정+ 공업+ 환경	6	3			3				
	행정+ 공업+ 시설	1	1							
	농업+ 수의+ 환경	1			1					
	행정+ 농업+ 수의	2			1			1		
	행정+ 농업+ 환경	1						1		
	행정+ 보건+ 환경	2	1			1				
	행정+ 해양수산+ 시설	2	2							
	행정+ 전산+ 방송통신	3	3							
	행정+ 농업+ 해양수산	1						1		
	행정+ 농업+ 녹지	8	3					5		
	행정+ 세무+ 농업	7					1	5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89)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 세무+ 사회복지	2						2		
	행정+ 세무+ 시설	1							1	
	행정+ 농업+ 시설	6	2					4		
	행정+ 시설+ 방송통신	1	1							
	보건+ 의료기술+ 간호	2			2					
	보건+ 의료기술+ 약무	1			1					
	행정+ 사회복지+ 농업	1					1			
	행정+ 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 세무+ 농업+ 시설	1							1	
	행정+ 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행정+ 보건+ 의료기술+ 간호	1			1					
	행정+ 환경+ 시설+ 보건	1				1				
7급	소계	216	133	2	36	6	4	22	13	
	행정	44	37	1				6		
	세무	6	6							
	사회복지	13	2					8	3	
	공업	2	1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90)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의료기술	5			5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2	10			1	1			
	수의	1			1					
	보건진료	1			1					
	행정+ 세무	8	5				1	1	1	
	행정+ 사회복지	9	7						2	
	행정+ 전산	7	7							
	행정+ 농업	7	4		1		1	1		
	행정+ 공업	1	1							
	행정+ 녹지	2	2							
	행정+ 보건	1			1					
	행정+ 시설	20	18					1	1	
	행정+ 해양수산	1	1							
	시설+ 해양수산	1	1							
	공업+ 시설	1				1				
	사회복지+ 시설	1	1							
	농업+ 녹지	1			1					
	행정+ 공업+ 농업	4	4							
	행정+ 공업+ 환경	7	5			2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9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농업+ 수의+ 환경	1			1					
	행정+ 전산+ 방송통신	2	1	1						
	행정+ 농업+ 녹지	2	1		1					
	행정+ 세무+ 농업	2						1	1	
	행정+ 세무+ 전산	1	1							
	행정+ 세무+ 수의	1						1		
	행정+ 세무+ 녹지	1							1	
	행정+ 세무+ 사회복지	5	1				1		3	
	행정+ 세무+ 시설	1	1							
	행정+ 농업+ 시설	1	1							
	행정+ 해양수산+ 시설	1	1							
	행정+ 시설+ 방송통신	1	1							
	사회복지+ 세무+ 수의	1						1		
	전산+ 공업+ 방송통신	4	4							
	해양수산+ 환경+ 시설	1	1							
	보건+ 간호+ 의료기술+ 약무	8			8					
	행정+ 사회복지+ 환경+ 시설	1							1	
	행정+ 사회복지+ 보건+ 간호	3	2		1					
	행정+ 농업+ 녹지+ 시설	2						2		
8급	소계	185	113	4	17	12	9	16	14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92)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	60	39	2		1	5	7	6	
	세무	2						1	1	
	사회복지	4	2				1		1	
	공업	4	3			1				
	농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8			8					
	의료기술	5			5					
	간호	3			3					
	환경	4	1			3				
	시설	21	19			2				
	행정+ 세무	9	7						2	
	행정+ 사회복지	8	7				1			
	행정+ 전산	3	3							
	행정+ 농업	6	4		1				1	
	행정+ 보건	2	2							
	행정+ 시설	10	5			2	1	1	1	
	행정+ 해양수산	3	3							
	공업+ 시설	3	2			1				
	전산+ 방송통신	2	2							
	행정+ 공업+ 환경	3	2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93)

직렬별		기관별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본청							
	행정+ 전산+ 방송통신	4	2	2						
	행정+ 농업+ 녹지	4	1				1	1	1	
	행정+ 세무+ 농업	1						1		
	행정+ 세무+ 사회복지	2	1					1		
	행정+ 세무+ 시설	1						1		
	행정+ 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 농업+ 시설	1						1		
	행정+ 세무+ 전산	1	1							
	보건+ 공업+ 환경	1				1				
	해양수산+ 환경+ 시설	1	1							
	행정+ 사회복지+ 환경+ 시설	1						1		
	행정+ 사회복지+ 보건+ 간호	1	1							
	행정+ 녹지+ 농업+ 해양수산	2	1					1		
9급	소계	72	24		2	2	3	20	21	
	행정	24	5				3	8	8	
	사회복지	14						4	10	
	녹지	1	1							
	환경	1	1							
	시설	8	6					2		
	행정+ 전산	2	2							
	행정+ 사회복지	2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94)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 세무		1							1	
	행정+ 농업		1							1	
	행정+ 보건		2	1		1					
	행정+ 시설		4	3			1				
	행정+ 해양수산		1							1	
	행정+ 환경		1				1				
	공업+ 시설		1	1							
	행정+ 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 농업+ 녹지		3						3		
	행정+ 공업+ 농업		1	1							
	행정+ 보건+ 의료기술		1			1					
	행정+ 사회복지+ 환경+ 시설		1						1		
	행정+ 공업+ 시설+ 해양수산		2	2							
지도직 합계			31			31					
지도관	소계		2			2					
	농촌지도관		2			2					
지도사	소계		29			29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소계		1	1							
	기록연구사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95)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기능직	합계									
기능직 합계				<b>86</b>	52	5	6	10		7	6	
기능6급	소계			<b>7</b>	6			1				
	기계			<b>2</b>	2							
	운전			<b>2</b>	2							
	선박항해+ 선박기관			<b>1</b>	1							
	사무			<b>1</b>	1							
	전기+ 기계			<b>1</b>				1				
	통신+ 전화상담+ 전기											
기능7급	소계			<b>14</b>	7		2	1		2	2	
	기계			<b>1</b>	1							
	방호			<b>1</b>						1		
	운전			<b>4</b>	2		1	1				
	선박항해+ 선박기관			<b>3</b>	3							
	사무			<b>4</b>			1			1	2	
	통신+ 전화상담+ 전기			<b>1</b>	1							
기능8급	소계			<b>9</b>	8		1					
	운전			<b>5</b>	4		1					
	조무			<b>1</b>	1							
	통신+ 전화상담+ 전기			<b>3</b>	3							
기능9급	소계			<b>56</b>	31	5	3	8		5	4	
	기계			<b>4</b>	3			1				
	운전			<b>13</b>	5	2	3	3				
	사무			<b>31</b>	19	3		2		3	4	
	통신+ 전화상담+ 전기			<b>2</b>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96)

직렬별		기관별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본청							
	방호	4	1			1		2		
	위생	2	2							
별정직 합계		4	1		3					
별정6급 상당	소계	2	1		1					
	보건위생감시원	1			1					
	비서	1	1							
별정7급 상당	소계	2			2					
	농기계교육교관	1			1					
	보건위생감시원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97)

## 사천시 규칙 제53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31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징계기준의 비고란 본문을 제1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 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98)

[별표 1]

## 징 계 기 준 (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타		과면 과면 과면 과면-해임	과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과면 과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과면 과면 과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성의무 위반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과면 과면-해임 과면-해임 과면-해임 과면-해임 과면-해임	과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과면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음주운전 마. 기타		과면 과면 과면-해임 과면-해임 과면-해임	과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과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과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1.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2.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99)

##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265호

사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월 31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분장하고” 를 “담당하고” 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건설공사” 를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으로, 같은 조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전기공사” 를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정보통신공사” 를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과 사목,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00)

아.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제2호의 가목 중 “따른 용역” 을 “따른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제3조제2호다목 중 “나목 외의 용역” 을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조·구매” 를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

9.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제6조제2항 중 “명시하여” 를 “분명하게 밝혀”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를 “10일(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제외) 이내에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동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01)

시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같은 조 제3항 “  
있는 경우에는” 을 “있으면” , “심사부서에” 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로 “심  
사부서는” 을 “심사부서의 장은”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1호서식, 제3-2호서식, 제3-3호서식, 제3-3호서식,  
제3-4호서식,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03)

[별지 제2호서식]

##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용역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p>◦ 용역개요 :</p> <p>◦ 예산재원내역 : 국비 , 도비 , 시비</p> <p>◦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2. 비목별 기초계산서                      3.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4. 인쇄물산출 기초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5. 그밖에 참고자료(과업지시서, 계획서, 견적서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p>			

발신명의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04)

[별지 제3-1호서식]

##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담당자				결 재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협 조				
접수일자	. . .					

건 명		요청기관	
산 출 금 액			
구 매 예 정 일 자			
계 약 방 법			
수의계약시 계 약 대 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 타			
<p>◦ 물품구매 개요 :</p> <p>◦ 예산재원내역 : 국비 , 도비 , 시비</p>			
<p>◦ 첨부 서류</p> <p>1. 산출기초조사서 1부.</p> <p>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서, 설명서(사양서)</p> <p>3.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시행품의서 등)</p>			

발신명의	
------	--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05)

##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적용단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 ○ 과장    성명    (인)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07)

##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단 위	산 출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수 량	단 가	금 액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감 가 상 각 비						
	수 리 수 선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시 험 검 사 료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보 리 후 생 비							
보 관 가 공 비							
외 주 가 공 비							
안 전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통비·통신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기 타 법 정 경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 ○ 과장    성명                    (인)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08)

[별지 제3-3호서식]

##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담당자				결 재
시행일자						
수 신 자		협 조				
접 수						
접수일자						

요 청 기 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 출 금 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상 호 : (대 표 자 : )				
계 약 대 상	주 소 :				
업 체	전화번호 :				
<p>◦ 인쇄물내역</p> <p>1. 규 격 : 절( mm × mm)</p> <p>2. 수 량 :</p> <p>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p> <p>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p> <p>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p> <p>6. 체본종류 :</p> <p>7. 특수사양 :</p> <p>8. 기 타 :</p> <p>◦ 예산재원내역 : 국비 , 도비 , 시비</p>					
<p>◦ 첨부 서류</p> <p>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p> <p>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p> <p>3.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p> <p>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시행품의서 등)</p>					

발신명의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09)

##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 ○ 과장 성명 (인)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10)

[별지 제3-4호서식]

##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담당자				결 재
시행일자						
수 신 자		협 조				
접 수						
접수일자						

요 청 기 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 출 금 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 약 대 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예산재원내역 : 국비 , 도비 , 시비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시행품의서 등)					

발신명의	
------	--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11)

## 인쇄물기획 · 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 획 료 또 는 다 자 인 비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 를 산정한 경우, 인 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 림 출 력 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 출력비'를 산정한 경 우, 인쇄물 심사요청 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 타 비 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 ○ 과장 성명 (인)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12)

[별지 제4호서식]

##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담당자				결 재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협 조				
접수일자	. . .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설 계 자	상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	
발 주 자	담당자 :	(전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li> <li>◦ 예산재원내역 : 국비 , 도비 , 시비</li> <li>◦ 첨부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li> <li>2.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li> <li>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li> <li>4.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li> </ol> </li> </ul>			

발신명의	
------	--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13)

사천시 훈령 제266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관련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14)

[별표 1]

## 본청 과의 세부 분장사무 (제3조 관련)

(담당관소관)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기획감사 담당관	기획담당	1. 시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 시정 주요시책의 연구입안 및 자료 수집, 정책토론
		3. 업무계획의 평가
		4. 지시사항 처리 종합 관리
		5.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6. 지방의회 협력
		7. 중·장기 시정개발에 관한 업무
		8. 투자사업 추진상황 관리
		9. 행정협의회 운영
		10. 시 상징물 제정 업무
		11. 시장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의 관리
		12. 시정제안 및 견문보고제 운영
		1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4. 시정백서 발간
		15. 목표관리제 운영
		16. IBT 운영 및 시책개발
		17. 각종 위원회 및 시정현황 관리
		18. 중앙, 도, 타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업무 벤치마킹 및 파급
		19. 정책실명제 운영
		20. 과내 서무·일상경비관리 및 보안 업무
		21.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2.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15)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기획감사 담당관	공보담당	1. 공보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및 계획 수립 2. 시보 발간 3. 전시 홍보 및 매체 동원에 관한 사항 4. 공고·고시업무 5. 시정홍보용 간행물 발간 및 VTR 제작 6. 공보 기자재 관리 및 방송실 운영 7. 각종 행사 사진촬영 및 방송시설 협조 8. 보도자료 및 주요 연설문 작성 관리 9. 간행물 구독계획 수립 운영 10. 공보 발행
	예산담당	1. 사업예산의 편성 2. 사업예산의 집행통제 및 배정 3. 예비비 관리 4. 지방채, 채무부담 관리 5.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관리 6. 각종 보조 및 용자사업의 통제 7. 예산절감계획 수립 8.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9. 경영수익사업의 기획·조정 10. 지방공기업의 기획·조정 11. 지방공사 공단의 예산회계 지도 1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13. 전시지방재정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재정 투·용자사업 심사분석 15. 기타 지방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16. 표준지방재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16)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기획감사 담당관	감사담당	1. 감사계획 수립
		2. 시 본청 및 사업소와 소속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 감사 및 특별감사
		3.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4. 산하 기관장의 교체에 따른 사무인계·인수 확인검사
		5. 일상감사
		6. 시 산하관련 단체에 대한 회계 및 수사·특별감사
		7. 주요건설사업 사전 서면 감사
		8.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9. 민원사무의 처리사항 검열
		10. 특명사항의 조사
		11. 공무원 비위 조사
		12.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사항 검열
		13.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4. 사정업무의 계획 수립 및 추진
		15. 망실 훼손 사고 조사
		16. 기동감찰
		17. 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18.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운영
		19. 공직자 병력사항 신고
		20.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의 사전심사
		21. 일반 및 학술용역 사전심사
		22. 물품 구매제조 사전심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17)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전략사업 담당관	전략시책 담당	1. 전략사업의 기획·조정
		2. 관광분야 기업·민간자본 투자유치
		3.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수립 및 기획·조정·총괄추진
		4.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 관련 업무
		5. 녹색성장업무 총괄·조정 및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6. 녹색성장업무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7.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
		8. 기타 전략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과내 서무·일상경비관리 및 보안 업무
		10. 과내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핵심사업 담당	핵심사업 담당	1. 각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2. 삼천포연육연도 관광교량 설치사업
		3. 노인복지 종합타운 조성
		4. 기타 시장 특별지시사업
해양레저 담당	해양레저 담당	1. 해양레포츠(크루즈,마리나,요트)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 요트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 관련 업무
		4. 수상레저 관련 업무
		5. 수상동력 레저기구 등록 관리 및 지도 단속
		6. 해양레포츠 대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무인도서 레이저쇼 관련 사무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18)

## (총무국 소관)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총 무 과	총무담당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및 일상경비 관리
		2. 정례행사(조회, 공무원의 이·취·퇴임행사 등)
		3. 의식, 보안, 기밀, 복무에 관한 사항
		4. 문서수발 통제 및 문서분류에 관한 사항
		5. 기록물 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6. 자료관시스템 운영관리
		7. 공인관수 및 공인대장 정비
		8. 국제 및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사업 및 교류사업 추진
		9. 국제업무 및 각종 행사 참여 지원
		10. 발간실 운영
		11. 시장, 부시장 사무 인계·인수
		12. 출장통제 및 당직명령
		13. 상황실 및 회의실 통제
		14. 자체 비상대비업무의 조정통제
		15. 전시 자체 행동절차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6. 전시 정부기관 소산 및 이동에 관한 사항
		17. 지역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18. 시청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후생·복지 및 동호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연찬회 및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19)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종 무 과	총무담당	23. 청사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24. 직원친절 향상 및 혁신을 위한 자체교육 등 종합계획 수립 시행
		25. 타 국, 타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
		26.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사항
		27. 일반노조 관련 업무(무기계약근로자 포함)
	시정여론 담 당	1. 주요시책업무 종합 추진(시책성 행사 포함)
		2. 읍면동 행정 및 직원 복무 지도·단속
		3. 읍면동 예산 운영
		4. 행정사무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5. 시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6. 읍면동 사무개선에 관한 사항(기능전환, 사무실태조사 및 분석, 사무이관 조정에 관련한 자치법규정비 등)
		7. 읍면동 관련 주요 정책사항 심의 결정 (신축, 증축, 이전에 관한 부지선정 등)
		8. 새마을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바르게살기운동 및 한국자유총연맹 관련업무
		10. 도·시정 모니터요원 운영 및 지도 육성
		11. 적십자업무에 관한 사항
		12. 시 출장소 운영 및 지도·감독
		13. 행정서사 관련 업무
		14. 여론행정의 총괄(지역동향 관리)
		15. 주민 대화의 광장 운영
		16.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
		17. 지역대책협의회
		18. 주민 건의사항 관리
19. 새터민 거주지 보호업무		
20.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20)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종 무 과	시정여론 담 당	2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등 업무에 관한 사항
		22. 출향인사 관리업무
		23. 대학생아르바이트 업무
		24. 사무전결처리규칙 조정 업무
		25. 삼천포대교 해맞이축제 업무
		26.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의 수행사항 이행 및 지방분권, 지방이양 관련업무
		27.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28. 통합행정서비스현장 관리 업무
		29.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 계획수립 및 추진
		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 협조
	인사담당	1. 공무원의 임용(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징계의결, 표창,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 운영
		4. 공무원의 각종 시험요구 및 시험관리
		5.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
		6.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리
		7.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업무
		8. 공무원증 발급 업무
		9. 시 직제기구, 정원관리 등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보수, 제 급여 업무
		11. 공무 국외여행 관련 업무
		12.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 기여금, 대부금, 학자금 업무
		13. 무기계약 근로자 정수책정 및 관리·근무지 조정(4대보험, 퇴직금지급업무 등)
		14. 기타 공무원 인사(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근무지 조정 포함)에 관한 사항
		15.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21)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총 무 과	평생학습 담당	1. 평생교육계획 수립 시행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3.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4. 학교의 평생교육 지원업무 연계 등
		5. 장학기금 조성 운영
		6. 인재육성
		7. 학교급식 업무지원
		8. 아카데미 교양강좌 운영
		9.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등 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공 도서관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능대학관련 업무
		12. 기타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정보법무과	정보기획 담당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조정
		2.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3. 지역정보화 보조·지원사업 추진
		4. 정보화마을 운영 업무
		5. 정보전문인력육성 및 시민정보화교육 훈련 업무
		6.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 계획수립 및 추진
		7. 전산교육장 운영 및 관리
		8. 전산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
		9. 전산업무 표준화에 관한 사항 및 전산관리 지도감독
		10. 전산실 운영관리
		11.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및 고도화 추진 업무
		12. 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사 천 시 공 보

제298(122)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정보법무과	정보기획 담당	13. 행정 및 일반업무용 S/W 보급 및 관리	
		14. 타부서 전산업무 지원(재정관리, 가족관계등록정보, 건축, 주민등록전산, 지방세, 세외수입 등)	
		15. 업무관리(온-나라) 시스템 운영관리	
		16. 행정지식포털시스템 관리	
		17. 기타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 업무	
		18. 과내 서무·일상경비관리 및 보안 업무	
		19.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0. 사랑의 PC 보급관리	
		21. 일반업무용 컴퓨터 보급 유지관리	
		22. 지역(마을) 정보이용센터 운영관리	
		23.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24. 시니어정보문화센터 운영관리	
		정보통신 담당	1. 종합정보통신망 기반구축 계획수립 및 시행
			2. FAX서버 시스템 운영관리
	3. 통신보안 및 보안장비 운영 관리		
	4. 일반(행정)전화 및 전용회선 관리		
	5. 네트워크 시설, 인터넷, 위성망, 광통신망 등 운영 관리		
	6. 행정전화교환시스템 운영관리(콜메니저, 전화기, 요금등산, R-NMS, 음성방화벽 등)		
	7. IP영상방송 시스템 운영		
	8.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업무		
	9. 보안(암호화)장비 운영관리(방화벽, IPS, DDOS, VPN, WIPS, 등)		
	10. 정보통신 공공요금 통합관리		
	11. 초고속 광대역통신망(BCN) 구축사업 추진		
	12.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23)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정보법무과	정보통신 담당	13.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 운영관리	
		14. 공공기관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15.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업무 추진	
		16. 청내 전관방송장비 운영관리	
		17. 청내 방송설비(CATV및 MATV)운영관리	
		18. 전자문서회의시스템 운영	
		19. 무선국(구내이동통신) 총괄 운영관리	
		20. 타부서 정보통신시설공사 설계 및 감독업무 지원	
		21. 정보통신 부가시스템 운영 관리(e-Ring, 음성인식 자동안내, R-NMS)	
		22. 고속 국가정보통신망(통합망) 운영관리	
		23. 무선인터넷(Wi-Fi Zone)등 무선망 운영관리	
		법무통계 담당	1.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2.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3.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의 심사 및 공포		
	4. 훈령, 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5. 자치법규의 편찬		
	6. 법령집 및 관보의 관리		
	7. 법제 자료의 조사·수집 연구		
	8.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관리		
	9. 행정절차제도 운영		
	10. 법률 고문변호사 관리		
	11. 그 밖에 법제 및 송무에 관한 사항		
	12. 농림어업 총 조사		
13. 인구주택 총 조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24)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정보법무과	법무통계 담당	14. 경제 총 조사
		15. 경제통계통합조사
		16. 도시연감 작성
		17. 통계연보 발간
		18. 경남 사회통계 조사
		19.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20. 인구이동 통계
		21. 지역 내 총생산 추계관련 재정수지 조사
		22. 행정지도 발간
		23. 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
		24. 각종 통계와 조사·심사 및 부분 보존
		25. 행정규제개혁 추진
		주민생활 지원과
2.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4.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		
5.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현충일 행사 등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7. 불우이웃 돕기(설·추석명절 위문)		
8.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9. 급여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1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11.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급여지원 및 일반		
12. 보장결정, 중지에 대한 확정 및 통지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25)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 원 과	생활지원 담 당	13.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도	
		14. 자활지원계획 관리 및 자활사업 관련 업무	
		15. 생활안정자금 관리 및 운영	
		16.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7.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8.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및 운영	
		19.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업무	
		20.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21.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및 보장 심의	
		2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기금 관리 및 운영	
		23.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	
		24.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 및 관리	
		25.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및 대불금 관리	
		26.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업무	
		27.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및 본인부담환급금 등 지원	
		28. 중증진료 암 환자 등록 관리	
		29.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30. 의료급여 사례관리	
		31. 과내 서무·일상경비관리 및 보안 업무	
		32.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희망복지 지원담당	1.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기관 간 연계 구축
			2. 사회복지 공동모금 관련 업무
			3. 위기가정 발굴 및 긴급복지 지원
			4.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26)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 원 과	희망복지 지원담당	5. 구호양곡 및 구호물품 관리	
		6. 자원봉사계획수립 및 활동개발 운영	
		7. 자원봉사 단체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관리	
		8. 자원봉사자 육성에 관한 사항	
		9. 푸드뱅크 운영(1377전화)	
		1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사업)	
		11. 콜센터 상담(연계) 및 사례관리	
		12. 복지네트워크 운영 지도	
		13.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	
		14. 연말연시 이웃돕기	
		15. 희망복지지원 관련 읍면동 주민센터업무 총괄 관리 (사례관리모니터링, 내방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	
		16. 지역내 방문형서비스 총괄관리 등	
		통합조사 관리담당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규대상자 소득·재산조사
			2. 신규 신청자 조사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3. 중점보호대상자 소득·재산조사 결과 서비스연계 의뢰		
	4. 기초수급세대 가구원 전입, 변동에 따른 조사		
	5.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소득·재산조사 및 자격변동관리		
	6.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및 자격변동관리		
	7. 보육료 지원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및 자격변동관리		
	8.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및 자격변동관리		
9.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및 자격변동관리			
10. 본인부담경감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소득·재산조사 자격변동관리			
11.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대상자소득·재산조사			
12. 자활지원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및 자격변동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27)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 원 과	통합조사 관리담당	13. 긴급복지수급자 소득·재산조사
		14. 기초수급지원대상자 근로능력 판정 및 자격변동관리
		15. 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
		16. 부정수급 확인 및 환수대상자 선정
	장 애 인 복지담당	1. 장애인 단체 운영 및 법인에 관한 사무
		2.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3. 장애인 실태조사, 연구 및 등록업무
		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5.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6.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장애인 자동차 관련 업무
		7.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업무
		8. 장애인 사회활동지원(바우처)
		9. 부랑인(노숙자)업무 및 합심원 지원 관리
		10. 행려자 여비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11. 장애인복지대상자 변동관리 및 보장중지
		1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13. 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지원
		14.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담 당	1. 노인복지행정 일반 업무
		2. 노인복지시설(법인 포함)지원 관리 및 지도 감독
		3.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우대 시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건강관리에 관한 사무
		5. 노인의 취업기회 확충업무, 노인공경 및 노후 여가에 관한 사항
		6. 매·화장·묘지 등 장묘 관련 업무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28)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담당	7. 화장장 운영 및 관리		
		8. 가정의례에 관한 업무		
		9.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및 유지관리 업무		
		10.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건강관리기구 보급관리		
		11. 저출산고령화 업무 총괄		
		12.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사항		
		13. 기초노령연금 사무		
		14.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무		
		15. 노인복지 종합센터 건립 업무(공약사업 제외)		
		16. 삼천포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지도감독		
		17. 과내 서무·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 업무		
		18.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여성다문화 담당		1.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
				2. 여성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 관련 업무
				3. 여성 복지상담 및 선도·예방 사업
				4. 여성 옹호 및 여성단체 지도 육성
				5. 여성복지관련 법인에 관한 사무
				6. 건전가정 육성지도 및 남여가 함께하는 공동사회 만들기
7.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지원				
8. 여성“1366”상담전화 및 가출소녀 일일보호소 지정 운영				
9. 성폭력 피해 및 미혼모 발생 예방				
10. 가정해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11. 여성노인 생활 활력화 사업				
12. 여성정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여성능력개발교양 교육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29)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여성다문화 담당	13. 전통(향토)음식문화 계승보급 및 여성전문자격 취득운동 추진
		14.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15. 거주외국인지원업무 총괄(외국인 근로자 관련 업무 제외)
		16.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보육담당	1.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3. 보육시설 설치 및 인가
		4. 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5. 국공립보육시설 위·수탁 업무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관리
		6. 보육통계시스템 관리 및 보육 통계
		7. 영유아보육료 지원
		8. 보육종사자(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및 관리
	아동청소년 담당	1. 청소년 보호 및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2.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및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3. 청소년 이용(수련)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전반
		5. 청소년 유해행위 및 유해업소 계도·단속
		6. 청소년 건전 육성
		7.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
		8.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9.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 운영
		10. 청소년 비행예방활동 및 일반사항
		1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12. 청소년대책협의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30)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 담당	13. 재단법인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14.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공부방 관리
		15. 아동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6. 아동·청소년관련 법인에 관한 사무
		17. 아동복지사업단체의 지도·단속
		18. 요보호아동 수용조치
		19. 소년·소녀가장 책정 및 관리
		20. 아동급식(중식) 관련업무(토·일요일 및 공휴일)
		21. 어린이날 행사 추진
		22.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지도·단속
		23. 취약지역 거주 임산부 및 아동 복지 지원사업
		24. 임산부 및 아동 보건지원 사업
		25. 임산부 및 아동 복지서비스 사업
		26. 임산부 및 아동 교육서비스 사업
27. 임산부 및 아동 가족지원서비스 사업		
복지관운영 담당		1. 사회복지관(사천시 종합·서부) 프로그램 기획 운영
		2. 시설사용 허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관(사천시 종합·서부) 이용시민 편의증진 및 시설관리
		4. 기능교육 및 취미교실 지도강사 위촉
		5. 수강생 작품 전시회 및 수강생 모집(홍보)
		6. 도서 대여실 운영
		7. 재가복지사업
		8.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복지관)지원 및 지도감독
		9. 별리 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31)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복지관운영 담당	10. 종합사회복지관 차량 운행 관리
		11. 재가세대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12. 사회복지관(사천시종합·서부)예산 운영 및 관리집행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1.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관계 간행물 발간
		3. 출판사·인쇄사 신고 및 지도
		4.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5. 향토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6. 시사 편찬
		7. 문화시설물 관리 및 운영
		8. 공연장 및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영상물에 관한 사항 등 문화산업 관련업무
		9. 종교에 관한 사항
		10.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
		11. 게임산업 및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사천시 문화상 시상
		14. 과내 서무·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업무
		15.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16. 국어 사용 활성화 시책
		17. 문화바우처 사업
	문 화 재 담당	1. 지정문화재 관리 및 보수 정비
		2. 지표조사 및 시·발굴 조사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영향여부 검토		
4.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32)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5. 녹도 유물전시관 건립	
		6. 천연기념물 보호 및 관리	
		7. 비지정문화재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8. 토지종합정보망(LMIS) 자료 유지 관리(문화재 보호법)	
		9.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10.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11. 문화재관련 행사 지원	
		12. 전통향교 지원	
		13. 전통사찰 지정 및 관리·지원	
		14. 문화재 지정 및 해제	
		공연기획 담당	1. 문화예술회관의 종합기획·조정
			2. 자체 기획공연 관련 업무
			3. 회관 및 전시실 대관 업무
			4. 매표소 운영 및 예매 업무
	5. 시설사용료 부과·징수·시설임대 업무		
	6. 전기·통신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		
	7. 기계시설물 유지 관리		
	8. 무대조명시설, 무대장치시설, 음향조작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 담당	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관광이벤트 개발 시행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사항	
		3. 썸머페스티벌 및 바다영화제 행사	
		4. 관광업체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5. 관광홍보물 제작 관리	
		6. 관광홍보 및 안내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33)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문화관광과	관광진흥 담당	7. 관광에 관한 통계 및 자료 수집 분석
		8. 관광종사원 교육 및 관광기념품 개발 업무
		9.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10.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자원의 조사 및 홍보
		12. 전국단위 축제개발 및 발전방향 제시 등 연구·분석
		13. 여행바우처 사업
	관광개발 담당	1. 관광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2. 관광시설사업 추진
		3.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
		4.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업도시 관광레저형 업무
	체육지원과	체육지원 담당
2. 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스포츠클럽 업무 지도·감독		
3. 전국체육대회·시민체육대회 관련 종합 지원업무		
4. 직장단체 체육에 관한 사항		
5. 사천시청 여자농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업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7. 전지훈련팀 유치 및 관리		
8. 종목별 체육대회(전국·도시 대회) 유치 및 지원		
9.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0.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단,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행하는 체육은 제외)		
12. 체육진흥기금관리 및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된 업무전반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34)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체육지원과	체육지원 담당	13. 시장기, 생활체육회장배 체육대회 지원
		14. 과내 서무·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 업무
		15.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담당	1. 종합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2.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민간자본 유치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의 관리 기획 조정
		7. 체육시설물 관리(공설운동장 부지 내)
		8.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관리
		9.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
		10.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처리
		11. 입장료·사용료 및 기타수입 처리
		12. 생활체육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사항
		13. 기타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영장 담당	1. 수영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수영장 사용료 및 기타수입 처리
		3. 수영장 이용객 수영강습 및 프로그램 운영
		4. 기타 수영장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도민체전 운영담당	1. 도민체전 기획·운영·지원 등 업무 총괄	
	2. 도민체전 유치	
	3. 도민체전 기반시설 조성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35)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담당	1. 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추진
		2. 환경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지원 업무
		4. 낙동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5.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관련 업무
		6.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
		7.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8. 푸른 사천21 추진 및 실천협의회 운영
		9. 환경단체 관련 업무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련 업무
		11. 환경개선특별회계관리
		12. 자연보호 및 깨끗한 환경가꾸기 추진
		13. 특정도서 및 자연휴식지 관리
		14. 자연보호단체 지원 및 관리
		15.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수렵면허관련 업무
		16. 자연생태계 보전업무
		17. 토지종합정보망(LMIS) 관리(상수도·조수보호구역)
		18. 공중화장실 총괄 업무
		19.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관련업무
		20.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안전기준 확인업무
		21. 환경관련 건강피해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3. 파내 서무·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 업무
		24. 파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36)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환경보호과	대기보전 담당	1. 환경오염예방 종합계획 수립
		2. 대기, 소음, 진동 약취분야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대기,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4. 대기, 소음·진동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5.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징수관련 업무
		6. 대기 배출업소 조사 및 전산망 관리
		7.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운영 기술지원
		8. 환경신문고 운영 및 관리
		9. 환경기술인 신고 및 교육관리
		10.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11.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12. 생활악취 및 생활소음 관리
		13. 소음규제지역 지정
		14.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및 관리
		15.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16. 삼천포 화력발전소 오염원관리
		17. 기후변화 적응(그린스타트)관련 업무
		18. 탄소포인트제 운영
		19.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업무
		20. 탄소배출권 거래관련 업무
		21. 대기환경개선사업 관련 업무
		22. 황사관련 업무
		23. 악취 배출시설 관리
		24. 자동차공회전 제한 관련 업무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37)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환경보호과	대기보전 담당	25. 환경전문공사업(대기, 소음·진동) 등록
		26. 석면안전관리 업무
		27. 석면피해 구제사업
		28. 빛공해관련 업무
	수질보전 담당	1.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2.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지도점검
		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점검
		4.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산관리 및 청소대상자 관리
		5. 산업단지·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업무
		6.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 시공업 등록 및 지도점검
		7.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8.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9.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10. 수질 배출부과금 부과·징수관련 업무
		11. 폐수 배출업소 조사 및 전산망 관리
		12. 환경기술인 신고 및 교육관리
		13. 수질오염사고 방제 및 수습
		14. 오염물질 방지시설운영 기술지원
		15. 토양 및 수질오염 측정망 운영 및 관리
		16.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신고 및 관리
17. 기타 수질 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관리		
18. 전국수질오염원 조사		
19. 유독물 영업자 등록 및 지도점검		
20. 화학물질 사고대비 및 방제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38)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환경보호과	수질보전 담당	2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처리 및 지도점검
		22.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점검
		23. 환경전문공사업(수질) 등록
		24. 물놀이지역 수질조사
		25. 골프장 잔류농약관리
	폐 기 물 관리담당	1. 사업장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2.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3.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4.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지도점검
		5.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수리) 및 지도점검
		6.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지도점검
		7.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8.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및 지도단속
		9.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처리자 교육관리
		10.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부적정처리 지도단속
		1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대상기기 신고수리 및 지도점검
		12. 사업장·건설·지정폐기물 전자인계서 관리(올바로시스템)
		13.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전용, 임시) 발급
14. 소관 폐기물관련 행정처분(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15. 고물상(재활용업 포함) 영업관련 사항		
16. 폐슬레이트(폐석면) 처리비 지원사업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1. 민원편의 시책에 관한 사항
		2.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3.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 관리
		4.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5. 인감사무 및 인감발급 업무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39)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6. 주민등록업무 일반	
		7. 각종 제증명 발급	
		8. 각종 민원의 청취 및 상담	
		9. 민원전용 직인의 보관 관리	
		10.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11. 여권신청 및 교부업무	
		12.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팩스 및 인터넷 민원 접수 처리 포함)	
		13. 수입증지 계기 관리에 관한 사항	
		14.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민원사무처리상황 지도	
		16.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7. 무인 민원 발급업무 처리	
		18. 과내 서무·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 업무	
		19.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0. 민원 24운영	
		가족등록 담 당	1.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작성 및 편철
			2. 국적의 취득 및 상실
			3. 수형인명표 관리
			4. 파산자 대장의 관리 정비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
6. 결격사유조회 및 회보 업무			
7.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접수 및 처리			
8. 체적부 보존 관리			
9. 체적부 열람, 등본·사본 교부 및 증명			
10. 기타 가족관계등록 사무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40)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토지정보 담당	1. 지적서고 및 지적공부 관리
		2.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
		3. 지적 공부등록 현황보고
		4. 지적 정보센터 운영
		5. 지적통계 업무
		6. 토지(임야)합병, 지목변경
		7.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업무
		8.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업무
		9. 외국인 토지취득 업무
		10.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11.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 업무
		12. 소유권 정리
		13. 지적공부 오기 정정
		14. 지적 제 증명 발급
	지적담당	1. 지적 측량성과 검사
		2. 토지(임야)분할 업무
		3. 등록전환 업무
		4. 신규등록 업무
		5. 축척변경 업무
		6. 구획·경지정리 관련 업무
		7. 지적 복구업무
		8. 지적불부합지 관리
		9.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연속지적도 유지관리
10.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11. 지적장비 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41)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12. 토지이동신청 해태과태료 부과
		13. 지적공부작성 및 재작성
		14.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
		15. 지적경계정비 업무
		1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17.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18.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19.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관리
		토지관리 담당
	2.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3.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4.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공개·열람	
	5. 지가정보 관련기관 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운영	
	7.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이용실태 조사 등	
	8. 부동산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9.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변동관리	
	10. 부동산실명법 관련 업무	
	11.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공시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데이터 유지관리	
	새 주소 담당	1. 공간정보체계(GIS)업무
		2. 도로명부여 및 건물번호 부여
		3.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및 관리
		4. 수치지형도 신규 제작 및 갱신
		5.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서버관리
		6.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42)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새 주소 담당	7.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연계 활용
		8. 공간정보체계 추진 공동협의회 운영
		9. 새주소위원회 운영
		10. 지명위원회 운영관리
		11. 새주소관리시스템(KLIS-rn)운영
		12. 새주소 DB 갱신 관리
		13.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서버관리
		14.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유지관리
		15.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사업
		16. 지점제도 설치 및 관리
		17. 상세주소 정형화 사업
		18. 지명제도 운영 및 관리
		세 무 과
2. 지방세 목표액 책정		
3. 지방세정 홍보		
4. 지방세 통계 및 교부세 기초자료 조사		
5. 도세부과(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6. 지방세(도세) 비과세·감면처리		
7. 지방세 세정전산 관리		
8. 재정 인센티브제 운영		
9. 지방세 관련 조례·규칙 정비		
10.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리		
12.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13. 과내 서무·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 업무		
14.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43)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세 무 과	세무조사 담당	1. 세무조사 종합계획 수립
		2. 법인 및 개인 세무조사
		3.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증과세 대상 조사
		4. 주민세 부과(균등분, 재산분)
		5.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도세·시세)
		6. 과세 전 적부심사 처리
		7. 지방세(도·시세) 비과세 감면분 조사
		8. 지방세 관련 소송업무 수행
		9. 지방소득세 부과(종업원분, 법인세분, 양도소득세분, 소득세분, 특별징수분)
		10. 담배소비세
	재 산 세 담당	1. 시세부과(재산세, 자동차세)
		2. 토지, 건축물, 선박 등 과세자료 조사 및 변동사항 정리
		3. 시세(재산세, 자동차세)비과세 및 감면처리
		4.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처리
		5. 재산 등 조회 회시
		6. 기타물건(차량, 선박, 어업권 등)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고시
		7. 과세특례지역 결정·고시
	과표담당	1. 주택시가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2. 주택이외 상가 등 건축물 시가조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가격 결정·공시할 경우)
		3. 건물현황 및 주택특성조사
		4. 전산입력 및 시가산정
		5. 부동산(주택) 평가위원회 운영
		6.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공개·열람
		7.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처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44)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세 무 과	징수담당	1. 지방세 징수계획수립 시행
		2. 지방세 납기 내 징수
		3. 지방세 납세확인 경유제 및 관허사업 제한
		4.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추진(자동이체,인터넷뱅킹,텔레 뱅킹,가상계좌,신용카드납부 등)
		5. 지방세 세입결산
		6. 지방세 징수 일일보고 및 징수상황 보고
		7. 지방세 가산금 조정
		8.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9. 지방세 과오납 환부
		10. 지방세 체납처분(부동산, 동산 및 급여, 예금, 기타 채권, 자동차 등 압류 및 해제) 현행
		11. 지방세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부
		12. 법원 경매물건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13. 지방세 징수유예 등(체납처분 유예 등)
		14. 지방세 결손 처분
		15. 조세범 처벌 등(신용불량자 등록관리, 출국관리,기타 조세범 위반자 관리)
		16. 압류재산공매(부동산 및 차량 등) 및 매각 대금 배분 등
		17. 지방세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관리(대포차량 포함)
		18. 영수원부 관리
		19. 지방세 현장 방문 징수 및 체납처분
		20. 지방세 징수관련 문자음성메시지 관리 및 운영
		21. 지방세 체납 징수차량 및 장비 관리(PDA, 영치 시스템 등)
		22. 자동차세 징수 촉탁 업무
	세입관리 담당	1. 세입금 총괄 관리
		2. 국도비 보조금 등 송금 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45)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세 무 과	세입관리 담당	3. 세외수입 과정 총괄 관리		
		4.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5. 세외수입 징수상황 정기 및 수시 보고		
		6. 자금수급 계획수립 및 배정		
		7. 세외수입 전산관리		
		8. 수입증지 관리(도시 증지)		
		9. 자금 운용		
		10. 세입 예산 및 결산		
		11. 시금고 및 대행점(수납·지출) 계약 및 관리		
		12. 기부금품 모집 접수 및 관리		
		회 계 과	경리담당	1. 국·도·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제외)
				2.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3.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보관				
4. 지출증빙서의 심사				
5. 제지출 발의				
6. 분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회계감독 및 검사				
7. 분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출납계산서 심사				
8. 일상경비교부 및 정산서 심사				
9. 지출계산서 작성 및 제출				
10. 복식부기사업 추진 시행 및 운영계획 수립				
11. 복식부기에 의한 통합재무보고서 및 일반결산서 작성				
12. 복식부기 회계 정보시스템 운영				
13.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관리				
14. 복식부기 관련자료 수집 및 교육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46)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회 계 과	경리담당	15. 과내 서무·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 업무
		16.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	1. 물품의 구입, 수선, 제조 및 용역의 공급
		2. 공사의 도급 및 물건의 임대차와 기타 계약
		3. 물품의 출납·보관 및 처분 총괄
		4. 공사착공, 준공계의 처리
		5. 공사기성부분 및 하자보증금 징수·반환 발의
		6. 입찰·계약·하자보증금 징수·반환 발의
		7. 차량관리 운영(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제외)
		8.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에 관한 계약 사무
	재산관리 담 당	1.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2.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 과징
		3. 국·공유 잡종재산의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 확보
		4.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장관리 및 권리보전에 따른 등기·등록
		5. 국·공유 잡종재산의 소송업무 수행
		6. 권리의무증서 보존 관리
	청사관리 담 당	1. 본청·의회·보건소 청사·관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업무
		3. 본청·의회·보건소 관리용 공급자재 관리
		4. 본청·의회·보건소 청사 용역에 관한 사항
		5. 본청 사무공간 재배치에 관한 사항
		6. 읍면동청사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수선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7. 본청 신축, 증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
		8.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관련 업무(본청, 보건소, 읍면동 청사에 한함)
9. 구청사(재산이관 청사 제외)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47)

## [지역개발국 소관]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담당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홍보·경제교육 업무
		3. 담배소매인 관련업무
		4. 상공단체 활동지원 지도·감독
		5.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물가동향 분석 관리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업무
		7. 소비자 보호시책 수립, 피해구제센터 운영, 소비자 교육정보 전달
		8.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업무
		9.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관리
		10. 가격표시제, 부정경쟁 방지(위조상품 단속) 및 상품 실량 검사
		11. 산업동원 관련 업무
		12.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13. 복권법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4.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업무
		15. 수출입품목의 원산지 표시 확인 업무
		16. 경상남도 추천상품(QC) 관리
		17. 지역특산물 판매장 및 전시장 설치 지원관리
		18. 방문(통신)판매업 및 상거래질서 확립 추진
		19. 제조물 책임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업무
		20. 불법·불량공산품 지도·단속 업무
		21. 공예품개발 및 판로개척
		22. 지적소유권 업무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48)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담당	23. 국·과내 서무·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업무
		24. 과내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에 너 지 담당	1. 에너지(연료) 행정 종합대책 기획·조정
		2.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3. 에너지소비절약 시책 개발 및 추진
		4. 도시가스공사 계획 승인(신고)에 관한 업무
		5. 고압가스(제조·저장·판매·충전업) 허가관리
		6. 액화석유가스(충전·판매·집단공급) 허가관리
		7. 석유판매업 등록·변경·지위승계 및 관리 업무
		8. 석유제품 품질관리 및 유사석유 유통근절 대책
		9.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유치에 관한 업무
		10. 계량기 정기검사계획 수립 추진
		11. 계량기 제조·수리·증명업 등록·관리
		12. 승강기 관리업무
		13. 광업·광산에 관한 업무
		14. 전기 및 전기공급업체 지도·관리 업무
		15. 열사용 기자재 관련 업무
		16. 석탄 관련 업무
	항공산업 담당	1.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업무
		2. 무역진흥시책 종합기획 조정
3.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 및 수출산업 지원		
4.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유치 육성(메카노21사업)		
5. 해외시장 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49)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항공산업 담당	6. 경남항공우주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7. 항공우주엑스포에 관한 사항	
		8.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BTL사업)	
	일자리창출 담당		1.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총괄
			2. 실직자 대책 및 구인구직 등록
			3. 고용안정대책 및 고용촉진 훈련업무
			4. 취업지원관리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일자리센터 운영
			5. 고용관련 기관간 연계사업
			6.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 감독
			7.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사업 추진업무
			8. 청년실업대책 및 일자리 사업
			9.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10. 자립형공동체 사업
			11. 일자리 공시제 업무
			12. 지역공동체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공단조성과	기업지원 담당	1.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설립지원	
		2.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	
		3. 기업활동규제완화 및 애로타개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기술정보 획득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용	
		6. 벤처기업 육성 지원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50)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공단조성과	기업지원 담당	7.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조정
		8. 공장 신설, 증설, 변경승인 및 등록민원처리(개별입지)
		9.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0. 노동단체 지원 육성 및 현황 관리
		11.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2.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
		13. 체불임금 대책
		14. 노동조합 설립 변경·해산신고
		15.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
		16. 명장발굴 추천
		17. 기타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과내 서무·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업무
		19. 과내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공단조성 담당
	2. 산업·농공단지 조성업무	
	3. 공단조성에 따른 보상업무	
	4. 산업단지 준공 전 입주기업체 유치	
	5. 산업특구에 관한 제반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단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관리 운영	
	공단지원 담당	1. 산업단지 관리 운영
		2. 농공단지 관리 운영
		3.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
		4. 공단 내 기업유치활동 및 기업투자 지원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51)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공단조성과	공단지원 담당	5. 공단 내 공장 신설, 증설, 변경승인 및 등록민원 처리
		6. 공단 내 기업육성 및 애로타개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확장 업무
		8. 국내외 기업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9. 기업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지원 업무
해양수산과	수산행정 담당	1. 해양수산행정 업무의 기획조정 총괄
		2.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3. 수산단체 및 어촌계 설립인가·지도·육성·관리 감독
		4. 수산업경영인 및 전업어가 육성 관리
		5. 농어촌진흥기금 수산분야사업 관리
		6.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7. 수산물가공업 신고에 관한 사항
		8.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9. 수산통계에 관한 사항
		10. 수산시설 재해대책 총괄
		11. 수산물 수출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2. 수산물 유통질서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13. 수산물 축제에 관한 사항
		14. 수산물 품질인증제에 관한 사항
		15. 어업경영체(영어조합법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해양(어촌)관광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
		17.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18. 해양문화 체험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52)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해양수산과	수산행정 담당	19. 과내 서무·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 업무	
		20. 과내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1. 수산물공동브랜드 육성·관리에 관한 사무	
	자원조성 담당		1.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총괄
			2.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양식, 정치, 협동양식, 마을어업권)
			3. 수산증·양식사업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관리 (인공어초시설, 수산종묘방류 등)
			4. 정치성 구획어업허가 및 어장 관리
			5.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및 시설 관리
			6. 수산종묘생산업 허가 및 관리
			7. 어업권 등록 및 관리
			8. 어업권 분쟁조정 및 보상관계 업무
			9. 내수면 어업 면허·허가, 신고 및 생산지도 관리
			10.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대책 및 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11. 패각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12. 수산 동·식물 반입, 반출 관리 지도
			13. 자율관리형 어업 육성 관리
			14. 불가사리 구제사업
			15. 유어장 지정관리 및 적조대책에 관한 사항
			16. 패류독소 피해 예방대책 추진
			17. 남강댐방류 어업피해 대책에 관한 사항
			18.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9. 보호수면 및 육성수면 지정 관리	
		20.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사업 및 사후관리	
	21. 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53)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해양수산과	자원조성 담당	22. 어장환경보전 및 정화사업 추진	
		23. 어장정화정비업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어업지도 담당		1. 어업지도업무 총괄
			2. 어업인 교육
			3.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4.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행정처분
			5. 불법어획물 압수 처리
			6. 불법어업자 수사 및 사건처리
			7. 어업지도선 운용 및 승무원 관리·감독
			8. 어업감독 공무원 및 수산 특별사법 경찰관리 직무취급에 관한 사항
			9. 어선안전조업 지도 및 해양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0. 신 국제해양질서(한일, 한중어업협정)에 관한 사무(EEZ, TAC 등)
			11. 불법어업 전업대책
			12. 낚시어선업 신고, 관리 및 지도·단속
			13. 불법어획물 유통 지도·단속
			14. 연근해 어업허가·신고 및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사항
			15. 어선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어선피해 예방대책 및 복구사업 추진
			17. 어선 건조·개조 발주허가 및 지도·단속
			18. 어로시설 지원사업 및 관리(기관, 장비 등)
			19.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관한 사항
			20. 이동성 구획어업허가 및 관리
	21. 어업인 지원사업(유류비, 보험료, 진료비 등)		
	22. 부산신항개발사업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54)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해양수산과	어업지도 담당	23. FDA지정해역 위생관리에 관한 사무
		24. 폐선처리 및 방치예방업무
		25. 해파리구제사업
	연안관리 담당	1. 해양환경 보전대책 수립 추진
		2. 해양오염 방지, 지도 계몽
		3. 해양환경오염 방제작업 추진 및 피해보상 업무 처리
		4.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 지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양유입 오·폐수 예찰 감시활동(해양환경관리법에 관한 사항)
		6. 연안역 관리계획 수립 추진
		7. 바다 공유수면 관리 및 허가, 승인, 협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8.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감독
		9. 해양오염 방제작업, 시설 및 기기관리
		10. 연안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11. 항만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어항시설 사업 및 유지관리
		13.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 및 협의
		14. 바다골재 채취 허가
		15. 해양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16. 어업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17.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
18. 무인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 시 과	도시행정 담당	1. 도시계획구역내 공유재산(행정·보존재산 중 도시계 시설 관련)의 관리 및 용도폐지업무
		2. 기존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확인 및 보상계획, 이전등기 업무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55)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도 시 과	도시행정 담당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및 관리업무 4. 물류창고업 등록 관련 업무 5.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금 환급 6. 도시계획도로 기편입토지 공부정리 7.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업무 8.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 과내 서무·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 업무 10.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담당	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준공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5.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업무 6. 도시계획 통계 업무 7.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8.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추진 9. 도시계획조례 관리 10.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감독 및 집행(대로이상) 11.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관련 업무(대로이상) 12.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업무 13.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업무 14. 국토기본법(시 종합계획수립)관련업무 15. 공공측량계획 수립 16.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자료 유지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56)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도 시 과	도시개발 담 당	1.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공사감독 및 집행(대로미만) 3.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관련 업무(대로미만) 4.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 개발 및 이용시설 관련 업무 5. 토지종합정보망(KLIS) 자료유지 관리(온천공보호구역)
	공영개발 담 당	1. 환지처분·등기 및 환지증명원 발급 2. 환지청산금 조정·징수교부 업무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업무 4. 공영개발사업 관련 업무 5. 도시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 6. 기업도시 및 신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7. 행정타운 조성 및 입지선정 8. 사천물류단지 조성 업무 9.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업무 10.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 11.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지구 KLIS 자료유지 관리 12. 공업용지조성(산단포함)에 관한 업무 13. 특수목적법인 설립(공영) 및 관리 업무 14.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 관리
	도시민원 담 당	1. 개발행위허가(협의) 2.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3. 토지종합정보망(KLIS)자료 유지 관리 (산업단지, 군용항공법,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면) 4. 도시계획선 분할 협의 5. 행위제한 인허가 협의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57)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도 시 과	도시민원 담 당	6.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감독 및 집행
		7.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관련업무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관련 업무
		9.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관련업무(관광레저형업무 제외)
건 축 과	건축디자인 담 당	1.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 관련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2. 도시경관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업무(협의체 운영 포함)
		3. 도시경관협정 체결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 사천시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도시경관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업무
		6. 부서별 도시디자인 관련 협의에 관한 업무
		7. 옥외광고물 관련 공익요원 관리
		8. 옥외광고업자 종사자 교육 및 광고업자 관리
		9.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
		10.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11.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관리(신설·이설·교체 등)
		12.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13.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
		14.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관리
		15.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6. 주택사업특별회계
		17. 과내 서무·일상경비관리 및 보안 업무
		18.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담 당
		2.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제외)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58)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건 축 과	공동주택 담 당	3.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4.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5.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승인 및 지도관리
		6.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7. 임대주택사업 승인 및 지도 관리
		8. 국민 및 시영주택건설 관리
		9. 주택건설사업 승인(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된 건본주택 설치신고 및 사용승인 포함) 및 사용검사
		10. 공동주택 관련 통계
		11.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업무
		12. 주택건설사업 및 사업자 지도·감독
		13. 주택공급에 관한 입주자 모집 승인
		14. 임대주택 자치관리의 인가 및 지도·감독
		15.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조건변경수리
		16.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17. 연립·다세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8.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및 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19.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20. 부설주차장 관리(20세대이상 공동주택)
		21.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업무
		22. 토지종합정보망(LMIS)자료 유지 관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23. 노후주택의 안전관리 및 수해주택 피해조사 복구
		24.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25.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59)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건 축 과	건축허가 담 당	1. 표준설계도서 운영
		2. 건축사 관리
		3.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4. 용도변경 건축허가
		5. 건축관계 각종 통계작성 및 보고
		6. 건축행정 내실화대책 수립 추진
		7. 건축조례 및 건축위원회 운영
		8. 건축관련 진정·질의(건축허가 관련)
		9. 건축물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10. 건축법위반 위법 이행강제금 부과정수(건축허가담당소관 업무)
		11. 건축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12.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등기촉탁, 신고 및 행위 허가가 따르지 않는 기재사항 변경)
		14. 건축물대장멸실·말소·철거신고
		15. 교통영향평가(건축허가 관련)
		16. 건축민원 홈페이지 관리
		17. 건축물 표시정정·변경(건축신고담당 소관업무 제외)
		18.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19.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건축신고 담 당	1. 시 발주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검토 및 준공 처리
		2. 시 발주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 지도감독 [시설직(건축직)공무원 미 배치부서에 한함]
		3. 읍면동 발주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검토 및 착공·공사 지도감독·준공 처리
		4. 읍면동청사 신축·증축·대수선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60)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건 축 과	건축신고 담당	5. 건축경관관련 업무
		6. 건축신고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포함)이전·신고사항 변경신고]
		7. 건축물 사용승인(건축신고에 한함)
		8. 건축물 표시정정·변경(현장확인이 필요한 업무)
		9. 건축관련 진정·질의(건축신고 관련)
		10. 무허가 건축물 실태조사 계획 수립
		11.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행정 대집행
		12. 무허가 건축물 관련 보고 및 통제
		13.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건축신고담당 소관업무)
		건 설 과
2.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및 지도·감독		
3.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신고 관리		
4.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		
5.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7. 건설동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8. 골재 채취업 등록 관리 및 지도·감독		
9.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10. 공유수면관리(건설교통부 구거)		
11. 도선(마도호, 신수도호)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과내 서무·일상경비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3.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 담당	
		2. 지역개발사업 시행 감독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61)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건 설 과	지역개발 담당	3. 소규모 시설물 유지 관리(세천·구거·도로)	
		4. 도서개발사업 업무	
		5. 오지개발사업 업무	
		6. 동지역 토목공사 지도 감독지원	
		7.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8. 동지역 토목공사(소관분야) 지도·감독 지원	
		치수담당	1. 남강댐 관련 지역대책 및 지역발전계획 총괄 기획·조정
			2. 하천의 유지관리 및 하천감시
	3. 하천부지 점·사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연안 제외)		
	4. 하천공사의 시행 감독		
	5. 골재채취허가(하천·육상골재)		
	6. 골재 선별, 파쇄, 세척 신고수리		
	7. 소하천의 유지관리(농림부소관 제외)		
	8. 하천(하천·소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9. 폐천부지 관리		
	10. 토지종합정보망(LMIS)자료 유지 관리(하천법)		
	11. 동지역 토목공사(소관분야) 지도·감독 지원		
	농업기반 담당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집행, 감독	
		2.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업무	
		3. 배수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4. 농지개간 허가 및 지도	
		5.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관리	
		6. 방조제 개보수사업 및 관리	
		7. 양수장비의 이용 및 보존 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62)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건설과	농업기반 담당	8.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관한 업무
		9. 밭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0. 농업기반 시설물 한해대책 업무
		11. 농림부소관 국유지 관리
		12. 전원마을(교수촌)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14.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에 관한 업무
		15.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관한 업무
		16. 농촌 용수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17.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18. 농경지 및 농업기반시설 재해·재난관련 업무
		19. 동지역 토목공사(소관분야) 지도·감독 지원
		재난관리과
2.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운영		
3. 재난관리기금 관리 운영		
4.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운영		
5. 자연재난관련 통계조사 분석		
6. 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재의 날 운영		
8. 자연재난관련 민간단체 육성 지원		
9. 재해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관리		
10. 재난관리 평가업무 총괄		
11. 대테러 업무		
12. 국가재난대응 종합 훈련(자연재난)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63)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재난관리과	재난행정 담당	13. 자연재난대책 종합상황 및 기상정보 관리
		14. 자연재난대책·예방·대비·대응 업무
		15. E - 30분 대피계획 수립 추진
		16. 재해 예·경보 시스템 확충 점검관리
		17. 자율방재단 구성·운영
		18. 과내 서무·일상경비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9.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재난복구 담당	1. 자연재난의 피해조사 보고 및 원인분석
		2. 재난응급복구 계획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
		3.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시행
		4.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5. 풍수해보험 관련 사항
		6. 자연재난 복구예산 집행 및 결산
		7. 재해지도, 침수흔적도 제작
		8. 특별재난지역 정정·선포건의 등에 관한사항
		9.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
		10.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 지정 관리
	재난안전 담당	1.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책임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 협조·지원체계 구축
		3.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과약 및 동원
		4.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및 인적 재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5.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적재난관련 민간자율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인적재난취약 시기 안전관리에방 업무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64)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재난관리과	재난안전 담당	8. 유·도선 안전관리지도	
		9. 안전점검 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인적재난분야 기획·조정 및 평가 총괄	
		11. 특정관리대상시설·시특법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한 사항	
		12. 인적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3. 인적재난관련 통계조사·분석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14. 안전체험시설 및 기타 안전관련 시설물설치 및 관한 사항	
		1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6. 자연재난취약시기별 안전관리 예방업무 추진	
		17. 기타 인적재난 및 재난사업에 관한 사항	
		민 방 위 담당	1. 민방위 계획의 수립 운영
			2. 민방위협의회 운영
			3.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인력동원자원의 조사 및 관리
			5. 민방위 중요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
			6. 전시 민방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7. 민방공계획 및 훈련 실시
8. 기술지원대 운영			
9. 민방위대원 및 주민의 교육·훈련·홍보			
10.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민방위대 동원			
11. 민방위대 검열			
12. 민방위대의 신고망 운영 관리			
13. 직장민방위대 총괄 관리			
14. 을지연습 및 자체연습의 계획·조정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65)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재난관리과	민 방 위 담 당	15. 공익근무요원 관리 총괄
		16.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유공자 표창관련 업무
		17. 경보 싸이렌 관리
		18.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및 표어·포스터 공모 업무
		19. 민방위 시범훈련·시범마을 육성관리 업무
	120기동 담 당	1. 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
		2. 단순생활민원(옥내 상하수도 및 전기고장) 기동처리
		3.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120자원봉사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상조민원 지원(천막 및 전등 대여)
		6. 삼천포대교·초양교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
		7. 사천대교 연출조명시설 유지관리
		도로교통과
2. 자동차 운임, 요금 및 시간에 관한 사무		
3.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에 관한 사항		
4. 여객자동차 교통량 조사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인가·등록·신고 및 지도·단속·처분에 관한 사무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등록·신고 및 지도·단속·처분에 관한 사무		
7. 택시미터기에 관한 사무		
8.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		
9.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무		
10. 전시 수송동원계획에 관한 사무		
11. 과내 서무·일상경비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2.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66)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도로교통과	교통지도 담당	1. 교통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
		2.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
		3. 노외,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무
		4.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5. 주정차 질서제도 및 단속업무 전반
		6.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7. 견인 대행업체 지정 및 관리
		8. 주차단속요원 관리
	자동차관리 담당	1. 자동차관리업체(매매,정비,폐차)등록 및 지도감독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사무
		3.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4.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사무
		5. 무보험운행자 처분에 관한 사무
		6. 자동차 등록(건설기계 및 동지역 이륜차 포함)사무
		7. 자동차 정기검사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도감독
		8.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 업체 지도감독
		9.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압류 및 해지등록 사무
	도로시설 담당	1.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 군도·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도로 등급·노선 지정(조정) 및 준용도로 지정
		4. 관리청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관리(군도)
		5. 농어촌도로 정비 허가 및 관리
		6. 도로 교통량 조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67)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도로교통과	도로시설 담당	7. 군도·농어촌도로 편입토지 취득관리 및 용도폐지	
		8. 도로시설 사업 및 보상 관련 소송업무	
		9.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10. 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건설사업 지원	
		11. 일반국도, 지방도 건설사업 관련 수탁보상	
		12. 건설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시행 및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	
		14.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15. 자전거 등록업무 총괄관리	
		16. 방치자전거 처리	
		도로관리 담당	1. 도로관리시스템(GIS)유지 관리
			2. 도로유지 및 정비사업
			3. 도로 교량시설물 방호 및 유지관리
			4. 도로 점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5.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6. 도로점용 굴착허가 및 심의위원회 운영
	7. 도로 설해대책		
	8. 과적차량 단속 및 계획수립		
	9. 도로보수 관련 소송업무		
	10. 도로상 지장물(노점상, 노상적치물)단속		
	11. 도시계획도로 준공시설물 인수 및 관리		
	12. 춘추계 도로 정기정비		
	13. 차량제한 운행 허가사항		
	14.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한 사무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68)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도로교통과	도로관리 담당	15.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6. 접도구역 단속 및 관리
		17. 각산터널 유지관리
		18. 도로보수원 관리
녹지공원과	녹지담당	1. 녹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공유임야 대부 및 관리
		3. 조경수 및 가로수 식재관리
		4. 임업관계 용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5.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6. 꽃길·꽃동산 조성 관리
		7. 조경수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
		8. 산림통계 및 임산물 통계
		9. 무궁화 조성관리
		10. 도로변 소공원 관리
		11.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선정관리
		12. 과내 서무·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 업무
		13.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4.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15.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16. 옥상조경 사업 및 벽면녹화 사업
		17. 타 법률에 의한 녹지조성(조경)협의
	공원담당	1.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2. 군립공원 조성 및 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69)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3.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4. 도시공원 점사용 허가		
		5. 어린이 공원 관리		
		6. 국립공원 행위허가 협의		
		7. 시설녹지 조성 및 관리		
		8.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		
		9. 푸른 숲 선도원 관리		
		10.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		
		11.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		
		12. 공원재해예방 관리		
		13. 생활공원조성 관리		
		14. 국립공원 구역조정 등 관련 업무		
		산림경영담당	산림경영담당	1. 산지의 이용구분 조사 및 계획 수립
				2. 보전산지지정 관리 및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3.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				
5. 임업진흥촉진지역 지정, 해제 및 관리				
6. 산지 수목 굴취에 관한 사항				
7. 산림내 토사석 채취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8. 산림지리정보시스템(PGIS)구축 및 유지 관리				
9.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 관리				
10.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				
11. 임목 벌채 및 간벌신고, 허가 처리				
12. 산림 부산물 채취, 생산지도 및 생산지 확인				
13. 임목 등기에 관한 사무 처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70)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녹지공원과	산림보호 담당	1. 산불방지계획 수립 및 예방, 진화
		2. 임산물 가공공장 지도 및 불법임산물 단속
		3. 천연보호림 보호수, 노거수, 희귀수목 관리
		4. 산림목재 동원계획 수립
		5. 산림사범 지도 단속과 위반자 사법처리
		6. 등산로 정비
		7. 산불감시원 관리 및 산림공익근무요원 근무에 관한 사항
		8. 산불장비 기자재 및 차량 관리
		9. 산지정화 업무에 관한 사항
		10.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11.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12. 산림유역관리 사업
	산림방제 담당	1. 산림 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
		3. 소나무류 이동·단속 시스템 구축 등 주민홍보
		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예찰·실행 및 사후관리
		5. 산림병해충 나무주사 계획수립 및 실행
		6. 항공방제 및 예찰(소나무재선충병, 밤나무해충, 돌발해충)
		7. 산림병해충 약제 및 기자재수급 관리
		8. 수종갱신에 의한 조림 및 사후관리
		9. 어린나무가꾸기 및 덩굴류 제거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10. 통합 숲 가꾸기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11. 해안 방제림 조성 관리
		12.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13.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71)

[별표 2]

## 직속기관의 세부 분장사무 (제3조 관련)

(보건소소관)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보건관리과	보건행정 담당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의료장비 및 차량 관리
		3. 보건소내 문서·인사·예산관리 및 계약 용도에 관한 사항
		4. 감염성 폐기물 관리
		5.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6. 진료비 및 기타수가 징수
		7.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8. 보건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9. 지역보건지표와 전국 보건통계 산출 및 관리
		10. 보건복지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12.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 감독
		13. 공중보건 의사 관리
		14. 건강검진 및 건강진단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5. 방사선 촬영
		16. 청사 및 재산관리
		17. 과내사무·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 업무
		18.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72)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보건관리과	만성병관리 담당	1. 만성병 관리 예방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관리사업
		3. 국가 암관리 사업
		4. 기생충관리사업
		5.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
		6. 만성병 조사 감시사업
		7. 저소득층 특수 질병관리사업
		8.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9. 만성병 관련업무의 보건교육
		10. 심·뇌혈관 질환 관리
		11.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12.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
		13. 기타 만성병 관리 사업
	건강증진 담당	1. 시민 건강증진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관리
		3. 금연클리닉 운영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학교 보건 및 사업장 보건
		5.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의 기획 및 총괄
		6. 구강건강사업
		7. 영양관리 및 식이지도
		8. 건강증진 운동사업
		9. 건강증진 절주사업
		10. 비만관리사업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73)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보건관리과	건강증진 담당	11. 건강 전시관 운영 등 건강홍보사업
		12.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3. 실외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4. 건강 형평성 사업
	출산지원 담당	1. 저출산 대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2.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3. 모자보건사업 종합계획 수립
		4. 출산율 회복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6.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8. 가족보건 및 성교육, 성장담
		9. 심장병, 안면기형 시술사업
		10. 경남 I(아이) 다누리카드 발급 지원사업
		11.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2. 다문화가정 및 모자가정 건강 지원사업
		13. 가임기 여성 건강 증진사업
		14.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사업
		15. 임산부 건강관리 및 교육지원사업
16. 영양플러스사업		
17. 미취학아동 시력 검진사업		
18. 산후조리원 개설 신고 및 지도 감독		
19.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사업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74)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보건관리과	방문보건 담당	1. 방문보건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3. 정신보건관리사업
		4. 정신보건센터 운영
		5. 치매관리사업
		6. 치매상담센터 운영
		7.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8. 재가 암환자 관리 및 호스피스 관리사업
		9.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0. 인공관절 및 요실금 의료비 지원사업
		11. 방문보건 담당 관련업무의 보건교육
		12. 노인실명예방사업
	삼 천 포 보건센터 및 보건지소	1. 예방접종
		2. 지소 및 진료실 운영
		3. 보건사업 등 지원
		4. 공중보건 의사 관리 및 지도
		5. 보건지소 세외수입 관리
	보 건 진료소	1. 예방접종
		2. 진료소 운영
		3. 보건사업 등 지원
4. 보건진료소 세외수입 관리		
보건위생과	보건위생 담당	1. 공중위생행정 종합 계획
		2. 공중위생업소 신고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75)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보건위생과	보건위생 담당	3.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재교부)	
		4. 공중위생업소 위생 지도·점검	
		5. 공중위생 관련단체(조합 협의) 지도	
		6. 위생접객업 개인 서비스 요금 지도	
		7.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8. 불법영업 지도 단속	
		9. 공중위생 신고사항 변경신고	
		10.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11. 기타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2. 과내 서무·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 업무	
		13. 공중위생서비스평가	
		14.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리	
		식품안전 담당	1. 식품위생행정의 종합 계획
			2.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3. 식품위생 관리단체 자율지도 운영관리		
	4. 식품제조업소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 보고 관리		
	5. 식품위생접객업소 및 제조업소 지도 감독		
	6. 식품무허가(신고), 퇴폐·변태업소 지도 단속		
	7. 행정처분 및 사후 관리		
	8.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9. 집단급식소(위탁급식), 무료급식소 지도 관리		
	10. 부정·불량식품의 지도단속 및 1399신고 포상금제 운영		
	11. 식품수거·검사 관리		
	12. 식중독 예방사업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76)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담당	13.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운영관리	
		1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수입업 관리	
		15. 모범음식점 지정 및 좋은식단제 운영관리	
		16.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식품이력추적제 등 사후관리	
		17. 식품자동판매기 및 식품유통·판매업 위생관리	
		18.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	
		19. HACCP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	
		20. 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21. 자사제품 원료수입 사용내역 관리	
		22. 조리사면허증 교부(재교부)	
		23.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지정 관리 및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24.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위생관리	
		25.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및 위해식품 등의 회수 관리	
		26. 식품 등의 이물발견 보고관리	
		27.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영업 등록	
		28. 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수입식품 관리	
		방역담당	1. 법정감염병 종합대책 및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2. 방역대책 수립
			3. 의무소독업 신고처리 및 대상시설 관리
			4. 방역소독약품 및 기자재 관리
			5. 급성 전염병 환자 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6.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77)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보건위생과	방역담당	7. 세균검사 실험 및 검사장비 기자재 관리 8.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확인사업 9. 예방접종 및 지도 교육·홍보 10.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11. 결핵 및 한센병 관리 12.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리 13.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의약담당	1. 의약무 종합 지도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의료에 관한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3.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4. 의료유사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사항 5. 의약품 판매등록 및 의약품(화장품 포함) 관리 지도단속 6. 마약 및 마약사범 단속 7. 무허가 및 부정의약품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8. 헌혈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대마 및 양귀비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1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양도·폐기신고 사항 11. 의료기관의 세탁물처리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3. 의약품도매업 허가 및 지도 단속 14. 특수의료장비 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78)

## (농업기술센터소관)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농특산과	농정담당	1. 농업기술센터 내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농업기술센터내 문서·인사·예산관리 및 계약 용도에 관한 사항
		3. 농촌발전대책
		4. 농림사업 총괄 조정 및 평가
		5.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
		6.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7. 지역특성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재산관리
		10.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지원
		11. 농업인 축제행사관리
		12. 과내 서무·일상경비관리 및 보안 업무
		13.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4. 농어촌발전기금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5.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농지관리 담당		1.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업진흥지역 관리
		3. 분배농지 및 귀속농지 관리
		4.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업무
		5. 농지 일시사용허가 업무 전반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79)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축산과	농지관리 담당	6.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7.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8. 농지 불법 전용행위 지도·단속
		9. 농지원부 관리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0. 토지종합정보망(LMIS)자료 유지 관리(농업, 진흥, 보호구역)
	인력육성 담당	1. 농업후계인력 육성관리(여성농업 후계자 포함)
		2. 농업관련단체 지도 및 농민여론 수렴 관리
		3.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운영
		4.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5. 4-H조직 육성
		6. 귀농인력 정착 지원 및 지도
		7. 경관보전 직불제 업무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9. 농업 후견인제 및 인턴제사업
		10.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11.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
		12.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관리 지도
		13.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업무
		14. 농촌거주 미혼 남성 국제혼인사업
		15. 국제혼인 외국인 여성 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80)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축산과	인력육성 담당	16. 농어촌 건강보험 경감사업
		17. 농업인진용회관 관리
		18. 농촌지도자회 육성
		19. 생활개선회 조직 운영
	축산담당	1.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육성지도
		3. 가축개량 및 우량가축 보급
		4. 가축인공수정소 지도·관리
		5. 축산재해 대책추진
		6.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사후관리
		7. 사료관련 업무
		8. 축산물 가격 안정대책 추진
		9. 축산물 수출촉진 및 브랜드육성
		10. 축산분뇨처리 지원 및 관리
		11. 축산기술개발 보급사업 추진
		12. 가축통계 조사 및 분석
	가축위생 담당	1. 가축위생 및 가축방역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공수의사 및 공익수의사 관리
		3.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예방·근절대책 추진
		4. 가축질병예찰 및 가축예방접종
5. 공동방제단 운영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81)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축산과	가축위생 담당	6. 축산물 위생감시 및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단속
		7. 축산물 판매업소 및 가공업소 관리
		8. 동물병원 관리
		9. 유해 잔류물질 방지대책 추진
		10.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관리 및 약사감시
		11.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12. 동물보호 관련업무
		13. 축산물 이력추적제 사업
		14. 학교우유 급식지원
		15.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미래농업과	환경농업 담당	1. 친환경농업 지도 및 자급비료 생산 장려
		2. 기타 환경보전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직불제에 관한 업무
		4. 농약판매업 등록 및 지도·단속, 농약관리법에 규정된 업무
		5. 농촌지도사업 기획, 평가
		6.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7.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8. 농업기술 공보 및 농업관련 홍보 업무
		9.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및 관리
		10. 농민상담실 운영
		11. 농업인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82)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미래농업과	환경농업 담당	12. 농업인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시행
		13. 기타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농진회 육성 운영
		15. 친환경농자재 농가 제조기술 보급 및 지원
		16. 농산물품질인증에 따른 기술보급 및 지원
		17. 과내 사무일상경비관리 및 보안 업무
		18.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 담당
	2. 지역농업개발시설 관리 육성	
	3. 지역특산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	
	4.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새품종 개발시험	
	5. 자연학습원 관리	
	6. 꽃 양묘장 관리	
	7. 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경유물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업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10. 토양, 식물체, 관개수 등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11. 종합검정실 운영	
	12. 토양개량제 공급 및 종합농토개량사업	
	13.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14. 맞춤형비료 공급지원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83)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미래농업과	생활자원 담당	1.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2. 농촌가정 관리 지도 및 농업인 건강관리 지도
		3. 농촌 유아 및 노인 지도
		4. 농촌부녀자 노동관리 개선 지도
		5. 농촌 영양개선 지도
		6.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성
		7. 농식품 가공 및 이용기술 지도
		8.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9. 농식품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0. 농산가공식품의 가공조리 및 저장방법 지도
		11.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보전 지도
		12. 의생활 개선 지도 및 농촌생활문화 지도
		13. 생활과학관 운영 및 생활개선 교육
		14. 기타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15. 도시농업육성
	농촌관광 담당	1. 향토산업 육성사업
		2. 별주부전 테마파크 조성 관리
		3. 전통테마마을 육성관리
		4. 관광농원육성 지원사업
5. 농촌휴양자원 개발사업		
6. 색깔 있는 마을 육성 및 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84)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미래농업과	농촌관광 담당	7. 농촌관광산업 육성 지원
		8.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9. 농촌교육농장 육성
		10. 농촌민박사업지정 관리
		11. 도농교류촉진사업
		12. 농촌관광 자원화사업
		13. 기타 농촌관광에 관한 사항
기술지원과	유통담당	1. 양곡 수급 계획과 조절
		2. 정부양곡 보관·가공·조작·수송관리 및 감독
		3. 양곡가공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4.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
		5. 정부양곡 부산물, 포장재 관리
		6.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지원사업
		7. 정부양곡(공공비축미곡)매입 및 기타 양곡관리 관한 업무
		8. 농산물 원산지 표시지도·단속 및 품질 인증제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및 관리
		10.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
		11. 농산물 직거래 및 도소매시장 관리
		12.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13.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관한 업무
		14. 농산물 안정성 조사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85)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기술지원과	유통담당	15. Feel 경남 특산물박람회 참가에 관한 업무
		16. 농산물브랜드 관리에 관한 업무
		17. 과내 서무·일상경비관리 및 보안 업무
		18.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경영수출 담당	1. 농업경영개선지도
		2. 작목별 농산물 소득조사
		3.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지도
		4. 농업기술 경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교육장 시설물 관리
		6.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육성지도
		7. 농업인 정보화 사업추진
		8. 농축산물 수출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
		9. 수출촉진대책수립 및 수출교육 추진
		10. 농축산물 수출촉진자금 운영 및 지원
		11.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12.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지도
		13. 수출농산물 안정성관리
		14. 수출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추진
15.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		
16.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지도		
17.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8. 벤처농업육성사업 추진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86)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기술지원과	식량작물 담당	1. 식량생산계획 수립 및 시행
		2.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종자 알선 공급
		3.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4. 병해충 방제 농약 수급 및 농약 사용법 지도
		5. 수도전작물 식부면적 및 수확량 조사
		6. 농작물 재해대책
		7. 병해충 예찰포(수도, 소득작물)운영
		8. 쌀 전업농 육성
		9. 유희농지 작물 재배지도
		10.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관한 업무
		11. 농업기계화 영농단 재배기술 지도
		12. 기타 농산자재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식량작물 생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4. 고품질 쌀생산 자재지원
		15.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사항
		16. 농촌일손돕기에 관한 업무
		17.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관한 업무
		18. 전작물 생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원예특작 담당	1. 시설원예·과수·채소·화훼·특작생산 지원사업
		2. 소득작물 직접 지불에 관한 업무
		3. 시범사업 및 주산단지 육성 지원사업
		4. 잠업생산기술지도 및 육성 지원사업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87)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기술지원과	원예특작 담당	5. 소득작목 재배기술 지도	
		6. 산채류 재배기술 지도	
		7.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8. 기타 소득작물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9. 채소 종묘상 등록 및 지도	
		10. 수출농단 육성 및 기술지도	
		11. 소득작물 재해예방, 조사, 복구 추진	
		12. 녹차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	
		13. 녹차생산기술지도	
		14. 버섯생산지원사업 및 기술지도	
		15. 소득작목 분야별 연구회 육성	
		16. 마늘경쟁력제고사업 지원	
		17. 과수 FTA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18. 과수 FTA폐원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19. 과수원 정비사업	
		20. 과수 재해보험 관리 및 지원사업	
		21. 소득작목 기초통계조사	
		농기계 담당	1. 농업기계화 추진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농기계 공급
			3. 마을 공동보관창고 설치 지도
			4. 사천시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5. 산업기능요원(농기계운전, 수리요원) 관리			
6.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수리 사후 봉사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88)

## 사천시 훈령 제267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월 31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89)

[별표]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 총괄

직급별 부서별	합계	일 반 직							기 능 직					별 정 직	정 무 직	지 도 직	연 구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합 계	847	724	5	44	202	216	185	72	86	7	14	9	56	4	1	31	1
기획감사담당관	21	18		1	5	9	2	1	3				3				
전략사업담당관	12	12		1	4	5	2										
총 무 과	35	23	2	1	7	5	8		9	3		2	4	1	1		1
정보법무과	16	15		1	4	5	4	1	1				1				
주민생활지원과	25	25		1	6	8	8	2									
사회복지과	27	26		1	8	9	5	3	1				1				
문화관광과	24	23		1	6	9	6	1	1		1						
체육지원과	19	15		1	5	5	3	1	4	2			2				
환경보호과	19	18		1	4	6	5	2	1				1				
민원지적과	27	24		1	7	6	9	1	3				3				
세 무 과	28	26		1	9	10	6		2				2				
회 계 과	22	16		1	6	3	6		6		2	1	3				
지역경제과	19	18	1	1	5	9	1	1	1				1				
공단조성과	16	16		1	3	5	5	2									
해양수산과	22	17		1	4	5	7		5	1	3		1				
도 시 과	22	20		1	6	5	5	3	2				2				
건축과	22	21		1	4	7	8	1	1			1					
건설과	18	17		1	5	4	5	2	1				1				
재난관리과	21	17		1	5	4	6	1	4			3	1				
도로교통과	30	24		1	6	8	8	1	6		1		5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90)

직급별 부서별	합계	일 반 직							기 능 직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녹지공원과	17	16		1	5	5	4	1	1			1					
의회사무국	17	12	1	2	3	2	4		5				5				
보건소	79	73	1	2	22	30	16	2	4		2	1	1	2			
농업기술센터	50	16		2	7	6	1		2				2	1		31	
환경사업소	12	8		1	2	2	2	1	4		1		3				
수도사업소	13	11		1	3	2	5		2	1			1				
하수도사업소	18	14		1	5	2	5	1	4				4				
신수출장소	2	2			1	1											
사 천 읍	22	22		1	5	4	9	3									
정 동 면	15	13		1	4	4	2	2	2				2				
사 남 면	15	15		1	4	5	1	4									
용 현 면	15	14		1	4	3	2	4	1				1				
축 동 면	13	12		1	4	2	4	1	1		1						
곤 양 면	14	13		1	4	2	2	4	1				1				
곤 명 면	14	13		1	4	2	3	3	1		1						
서 포 면	14	13		1	4	4	2	2	1				1				
동 서 동	13	13		1	2	2	1	7									
선 구 동	12	11		1	2	2	3	3	1				1				
동 서 금 동	11	10		1	2	2	2	3	1		1						
별 용 동	14	12		1	2	4	2	3	2				2				
향 촌 동	11	10		1	2	2	3	2	1		1						
남 양 동	11	10		1	2	1	3	3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91)

기획감사담당관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5	9	2	4	
일반직	소 계	18		1	5	9	2	1		
	행 정	9		1	4	3	1			
	시 설	2				2				
	행정+ 세무	1			1					
	행정+ 세무+ 전산	1				1				
	행정+ 사회복지	1				1				
	행정+ 전산	1						1		
	행정+ 세무+ 사회복지	2				1	1			
	행정+ 농업+ 녹지	1				1				
기능직	소 계	3						3		
	사 무	2						2		
	기 계	1						1		

전략사업담당관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2		1	4	5	2		
일반직	소 계	12		1	4	5	2			
	행 정	5			2	2	1			
	시 설	1					1			
	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 시설	3		1		2				
	행정+ 해양수산+ 시설	2			2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92)

총무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정무직
		총합계		35	2	1	11	5	10	4
일반직	소 계	23	2	1	7	5	8			
	행 정	18	2	1	7	2	6			
	행정+ 전산	2				1	1			
	행정+ 농업	2				1	1			
	행정+ 시설	1				1				
기능직	소 계	9			3		2	4		
	기 계	2			1			1		
	운 전	3			1		2			
	사 무	4			1			3		
연구직	소 계	1							1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소 계	1			1					
	비서요원	1			1					
정무직	소 계	1								1
	정 무 직	1								1

정보법무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6		1	4	5	4	2
일반직	소 계	15		1	4	5	4	1		
	행 정	1			1					
	행정+ 전산	5			1	1	2	1		
	행정+ 방송통신	1		1						
	행정+ 전산+ 방송통신	2			2					
	전산+ 공업+ 방송통신	4				4				
	전산+ 방송통신	2					2			
기능직	소 계	1						1		
	사 무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93)

주민생활지원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5		1	6	8	8	2	
일반직	소 계	25		1	6	8	8	2		
	행 정	6			1	2	1	2		
	사회복지	4			1	2	1			
	행정+ 사회복지	14		1	4	4	5			
	행정+ 녹지+ 농업 + 해양수산	1					1			

사회복지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7		1	8	9	5	4	
일반직	소 계	26		1	8	9	5	3		
	행 정	10		1	3	5		1		
	사회복지	1					1			
	행정+ 사회복지	10			5	2	2	1		
	행정+ 보건	1					1			
	행정+ 사회복지+ 보건+ 간호	3				2	1			
	행정+ 공업+ 해양수산+ 시설	1						1		
기능직	소 계	1						1		
	운 전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94)

## □ 문화관광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24		1	6	10	6	1		
일반직	소 계			23		1	6	9	6	1		
	행 정			15		1	4	5	4	1		
	공 업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2			2					
	사회복지+시설			1				1				
기능직	소 계			1				1				
	기 계			1				1				

## □ 체육지원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19		1	7	5	3	3		
일반직	소 계			15		1	5	5	3	1		
	행 정			9			4	3	1	1		
	시 설			1				1				
	행정+시설			3		1			2			
	행정+농업+공업			1				1				
	행정+공업+시설			1			1					
기능직	소 계			4			2			2		
	기 계			1			1					
	운 전			1			1					
	위 생			1						1		
	통신+전화상담+전기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95)

환경보호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4	6	5	3		
일반직	소 계	18		1	4	6	5	2		
	행 정	4				1	3			
	환 경	5			1	2	1	1		
	행정+ 보건	1						1		
	행정+ 공업+ 환경	6			2	3	1			
	행정+ 보건+ 환경	2		1	1					
기능직	소 계	1						1		
	사 무	1						1		

민원지적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7		1	7	6	9	4		
일반직	소 계	24		1	7	6	9	1		
	행 정	6			2	1	3			
	시 설	9			3	2	3	1		
	행정+ 세무	1					1			
	행정+ 전산	1				1				
	행정+ 시설	5		1	2	2				
	행정+ 전산+ 방송통신	2						2		
기능직	소 계	3						3		
	사 무	3						3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96)

## □ 세무과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8		1	9	10	6	2			
일반직	소 계	26		1	9	10	6				
	행 정	5		1	2	1	1				
	세 무	7			1	6					
	행정+세무	14			6	3	5				
기능직	소 계	2						2			
	사 무	2						2			

## □ 회계과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2		1	6	5	7	3			
일반직	소 계	16		1	6	3	6				
	행 정	9		1	3		5				
	행정+세무	2			1	1					
	행정+시설	1			1						
	행정+시설+방송통신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공업+시설	1				1					
기능직	소 계	6				2	1	3			
	기 계	1						1			
	운 전	4				1	1	2			
	통신+전화상담+전기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97)

지역경제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19	1	1	5	9	1	2				
일반직	소 계	18	1	1	5	9	1	1				
	행 정	8		1	4	3						
	공 업	1					1					
	행정+ 농업	1				1						
	행정+ 세무	1				1						
	행정+ 기술	1	1									
	행정+ 시설	1				1						
	행정+ 공업+ 농업	1				1						
	행정+ 공업+ 환경	3			1	2						
	행정+ 공업+ 시설+ 해양수산	1							1			
기능직	소 계	1							1			
	운 전	1							1			

공단조성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16		1	3	5	5	2				
일반직	소 계	16		1	3	5	5	2				
	행 정	5			1	1	3					
	행정+ 시설	10		1	2	4	1	2				
	행정+ 공업+ 환경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98)

해양수산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22		1	5	8	7	1				
일반직	소 계	17		1	4	5	7					
	행 정	1				1						
	해양수산	6			2	1	3					
	행정+ 시설	1				1						
	행정+ 해양수산	6		1	1	1	3					
	해양수산+ 환경	1			1							
	해양수산+ 환경+ 시설	2					1	1				
기능직	소 계	5			1	3		1				
	선박항해+ 선박기관	4			1	3						
	사 무	1						1				

도시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22		1	6	5	5	5				
일반직	소 계	20		1	6	5	5	3				
	행 정	4				1	3					
	시 설	9		1	3	1	2	2				
	행정+ 시설	6			3	2		1				
	행정+ 농업+ 시설	1				1						
기능직	소 계	2						2				
	사 무	2						2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199)

## □ 건축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4	7	9	1		
일반직	소 계		21		1	4	7	8	1		
	행 정		2			1	1				
	시 설		12			2	3	6	1		
	행정+ 시설		7		1	1	3	2			
기능직	소 계		1					1			
	조 무		1					1			

## □ 건설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8		1	5	4	5	3		
일반직	소 계		17		1	5	4	5	2		
	행 정		4			1	1	2			
	시 설		7		1	1	1	2	2		
	행정+ 농업		1					1			
	행정+ 시설		2			2					
	행정+ 공업+ 농업		1				1				
	행정+ 농업+ 시설		1			1					
	행정+ 해양수산+ 시설		1				1				
기능직	소 계		1						1		
	사 무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00)

재난관리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5	4	9	2		
일 반 직	소 계	17		1	5	4	6	1		
	행 정	3			1	1	1			
	시 설	2					2			
	공 업	1					1			
	행정+ 전산	2				2				
	행정+ 시설	4		1	3					
	공업+ 시설	3					2	1		
	행정+ 전산+ 방송통신	2			1	1				
기 능 직	소 계	4					3	1		
	운 전	1						1		
	통신+ 전화상담+ 전기	3					3			

도로교통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30		1	6	9	8	6		
일 반 직	소 계	24		1	6	8	8	1		
	행 정	6			3	1	2			
	시 설	4			1		3			
	행정+ 세무	1					1			
	행정+ 전산	2				2				
	행정+ 농업	3				1	2			
	행정+ 공업	1			1					
	행정+ 시설	3		1		2				
	행정+ 공업+ 농업	2				1		1		
	행정+ 세무+ 시설	1				1				
	행정+ 농업+ 시설	1			1					
기 능 직	소 계	6				1		5		
	방 호	1						1		
	운 전	1				1				
	사 무	3						3		
	위 생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01)

녹지공원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17		1	5	5	5	1		
일반직	소 계			16		1	5	5	4	1		
	행 정			3				1	2			
	녹 지			5			1	2	1	1		
	행정+ 녹지			3			1	2				
	행정+ 농업+ 녹지			5		1	3		1			
기능직	소 계			1					1			
	운 전			1					1			

의회사무국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17	1	2	3	2	4	5		
일반직	소 계			12	1	2	3	2	4			
	행 정			8	1	2	2	1	2			
	행정+ 시설			1			1					
	행정+ 전산+ 방송통신			3				1	2			
기능직	소 계			5						5		
	운 전			2						2		
	사 무			3						3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02)

□ 보건소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79	1	2	23	33	17	3		
일 반 직	소 계	73	1	2	22	30	16	2		
	기 술	1	1							
	보 건	18				10	8			
	의료기술	10				5	5			
	간 호	7				4	3			
	보건진료	11			10	1				
	행정+ 보건	6			4	1		1		
	보건+ 간호	4			4					
	행정+ 보건+ 의료기술	1						1		
	보건+ 간호+ 의료기술+ 약무	8				8				
	행정+ 보건+ 간호+ 의료기술	2		1	1					
	행정+ 사회복지+ 보건+ 간호	1				1				
	보건+ 의료기술+ 간호	2			2					
	보건+ 의료기술+ 약무	1			1					
행정+ 보건+ 간호+ 의무	1		1							
기 능 직	소 계	4				2	1	1		
	운 전	3				1	1	1		
	사 무	1				1				
별 정 직	소 계	2			1	1				
	보건위생감시원	2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03)

□ 농업기술센터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50		2	7	7	1	2	2	29	
일반직	소 계	16		2	7	6	1				
	농 업	4			3	1					
	수 의	1				1					
	행정+농업	3			1	1	1				
	농업+녹지	1				1					
	농업+농촌지도관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1			1						
	농업+수의+환경	2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기능직	소 계	2						2			
	운 전	2						2			
별정직	소 계	1				1					
	농기계교관요원	1				1					
지도직	소 계	31							2	29	
	농촌지도관	2							2		
	농촌지도사	29								29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04)

## □ 환경사업소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12		1	2	3	2	4		
일반직	소 계			8		1	2	2	2	1		
	공 업			1				1				
	행정+ 환경			1						1		
	행정+ 시설			2					2			
	행정+ 공업+ 환경			2			1	1				
	행정+ 보건+ 환경			1			1					
	행정+ 환경+ 시설+ 보건			1		1						
기능직	소 계			4				1		3		
	운 전			4				1		3		

## □ 수도사업소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13		1	4	2	5	1		
일반직	소 계			11		1	3	2	5			
	행 정			2			1		1			
	환 경			3					3			
	시 설			2			1	1				
	행정+ 공업+ 환경			1			1					
	행정+ 공업+ 시설			1				1				
	행정+ 공업+ 시설+ 보건			1		1						
	보건+ 공업+ 환경			1					1			
기능직	소 계			2			1			1		
	전기+ 기계			1			1					
	기 계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05)

하수도사업소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직급	직급									
총합계				18		1	5	2	5	5		
일 반 직	소 계			14		1	5	2	5	1		
	행 정			1			1					
	공 업			1					1			
	시 설			3			1		2			
	행정+ 시설			1						1		
	공업+ 환경			1			1					
	공업+ 시설			2				1	1			
	행정+ 공업+ 환경			3			1	1	1			
	행정+ 보건+ 환경+ 시설			1			1					
	공업+ 보건+ 환경+ 시설			1		1						
기 능 직	소 계			4						4		
	방 호			1						1		
	사 무			2						2		
	통신+ 전화상담+ 전기			1						1		

신수출장소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직급	직급									
총합계				2			1	1				
일 반 직	소 계			2			1	1				
	행 정			1				1				
	행정+ 해양수산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06)

사천읍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5	4	9	4	
일 반 직	소 계	22		1	5	4	9	3		
	행 정	8					5	3		
	사회복지	1					1			
	시 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3			2	1				
	행정+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정동면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4	4	2	4	
일 반 직	소 계	13		1	4	4	2	2		
	행 정	2				2				
	사회복지	3				2		1		
	시 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기 능 직	소 계	2						2		
	방 호	1						1		
	사 무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07)

## □ 사남면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4	5	1	4		
일 반 직	소 계	15		1	4	5	1	4		
	행 정	5				1		4		
	사회복지	2				2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 □ 용현면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4	3	2	5		
일 반 직	소 계	14		1	4	3	2	4		
	행 정	3				1	1	1		
	사회복지	2				1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기 능 직	소 계	1						1		
	사 무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08)

축동면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3		1	4	3	4	1			
일 반 직	소 계	12		1	4	2	4	1			
	행 정	3					2	1			
	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2			2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기 능 직	소 계	1				1					
	사 무	1				1					

곤양면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4		1	4	2	2	5			
일 반 직	소 계	13		1	4	2	2	4			
	행 정	4				1	2	1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기 능 직	소 계	1						1			
	사 무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09)

**곤명면**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4		1	4	3	3	3			
일 반 직	소 계	13		1	4	2	3	3			
	행 정	3					2	1			
	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기 능 직	소 계	1				1					
	방 호	1				1					

**서포면**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4		1	4	4	2	3			
일 반 직	소 계	13		1	4	4	2	2			
	행 정	1				1					
	세 무	1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기 능 직	소 계	1						1			
	방 호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10)

동서동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13		13		1	2	2	1	7		
일 반 직	소 계	13		13		1	2	2	1	7		
	행 정	5		5					1	4		
	사회복지	2		2						2		
	행정+ 세무	1		1			1					
	행정+ 해양수산	2		2		1				1		
	행정+ 세무+ 농업	1		1				1				
	행정+ 세무+ 사회복지	1		1				1				
	행정+ 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1					

선구동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12		12		1	2	2	3	4		
일 반 직	소 계	11		11		1	2	2	3	3		
	행 정	3		3		1			1	1		
	세 무	1		1					1			
	사회복지	3		3				1		2		
	행정+ 세무	2		2			1		1			
	행정+ 사회복지	1		1			1					
	행정+ 세무+ 사회복지	1		1				1				
기 능 직	소 계	1		1						1		
	사 무	1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11)

동서금동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1		1	2	3	2	3			
일반직	소 계	10		1	2	2	2	3			
	행 정	5		1	1		2	1			
	사회복지	3				1		2			
	행정+세무	2			1	1					
기능직	소 계	1				1					
	사 무	1				1					

별용동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4		1	2	4	2	5			
일반직	소 계	12		1	2	4	2	3			
	행 정	2						2			
	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기능직	소 계	2						2			
	사 무	2						2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12)

향촌동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1		1	2	3	3	2				
일반직	소 계	10		1	2	2	3	2				
	행 정	1			1							
	사회복지	2					1	1				
	행정+ 사회복지	1				1						
	행정+ 세무	1							1			
	행정+ 농업	1		1								
	행정+ 시설	1					1					
	행정+ 세무+ 농업+ 시설	1				1						
	행정+ 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 농업+ 녹지	1						1					
기능직	소 계	1				1						
	사 무	1				1						

남양동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1		1	2	1	3	4				
일반직	소 계	10		1	2	1	3	3				
	행 정	3			1		2					
	사회복지	2						2				
	행정+ 세무	1					1					
	행정+ 사회복지	1				1						
	행정+ 농업	2		1					1			
행정+ 세무+ 농업	1				1							
기능직	소 계	1						1				
	사 무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13)

##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3 - 33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3 - 1호
2. 점용·사용 승인년월일 : 2013년 2월 25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어선의 안전관리 및 접안에 필요한 PE부잔교 설치로 어업인 재산 보호 및 어로활동 지원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449-4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의 면적 : 420㎡(직접 : 57.4㎡, 간접 362.6㎡)
  - PE부잔교(L=14m, B=4.10m), 도교(L=12m, B=1.2m)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3년 2월 25일 ~ 2028년 2월 24일
7.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물과장)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점용·사용의 승인조건 : 붙임 참조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14)

## 승 인 조 건

1. 본 사업은 2013년도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공유수면에 PE 부잔교를 설치하여 어업인 재산 보호 및 어로활동 지원을 도모코자 하는 건입니다.
2. 동 시설물 운용 시, 시설물 및 주변해역에 각종 쓰레기(폐기물) 등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설물 및 주변 해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선박의 이·접안 및 유류 급유 시, 유류유출 등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4. 또한, 기 협의조건 중 지속적 이행사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시설물 운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해역이용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발견 즉시,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문화관광과)에 알려야 합니다.
7. 상기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8. 기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득한 후 공사 등 사업 시행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9. 승인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승인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및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고 의법 조치합니다.
10.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정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동 기한 내 이의 신청치 않을 시는 승인조건의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15)

사천시 고시 제2013 - 34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변경 승인번호 : 제2013-2호
2. 점용·사용 변경 승인 년월일 : 2013년 2월 25일
3.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748번지선 공유수면
4. 점용·사용 승인 면적 : 170.46㎡
5. 점용·사용 목적
  - 조선업체 생산물동량 하륙을 위한 물양장
6. 점용·사용 변경 승인사항
  - 점용·사용 기간
    - 당초 : 2010년 03월 01일 ~ 2013년 02월 28일
    - 변경 : 2013년 03월 01일 ~ 2028년 02월 28일
7. 점용·사용 변경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공단조성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점용·사용 변경 승인조건 : 붙임 참조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16)

## 승 인 조 건

1. 동 시설물은 조선업체 생산물동량 하륙을 위한 물량장 기간연장의 건입니다.
2. 해난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사고 시, 현장 내 유흡착제 등 유류방제 자재를 비치하여 작업 중 불의의 사고에 의한 유출 및 확산에 대비토록 하고 무엇보다도 작업 중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3. 물양장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며, 물양장 사용 시 주변 어업권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사후보상을 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4. 동 시설물 운용 시, 시설물 주변 및 주변 해역에 각종 쓰레기(폐기물) 등을 무단 투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주변해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 동 시설물에서의 물건 및 쓰레기 탈락, 유류유출 등에 의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6. 위 사항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7.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발견 즉시,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문화관광과)에 알려야 합니다.
8. 기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득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9. 승인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승인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및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고 의법 조치합니다.
10.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정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동 기한 내 이의 신청치 않을 시는 승인조건의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17)

사천시 고시 제2013 - 35호

## 구암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사업기간) 승인·고시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2009.9.28) 및 제2010-54호(2010.5.11) 및 제2011-167호(2011.12.30)로 승인·고시한 구암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합니다.

2013년 3월 6일

사 천 시 장

### □ 구암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사천 구암일반산업단지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서부경남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 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산48-1번지 일원
- 나. 면 적 : 208,710m<sup>2</sup>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기정
- 가. 개발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2. 12. 31
-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18)

○ 변경

가. 개발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3. 06. 30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주)드림에이스테크 대표이사 김을상

나.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201-1번지 목전빌딩 301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전	답	구	도	임
필 지 수	78	37	19	2	4	16
면 적(m <sup>2</sup> )	208,710	25,424	10,875	1,568	3,765	167,078
구성비(%)	100.0	12.1	5.2	0.8	1.8	80.1

나. 소유자별 현황

구 분	계	공유지			국유지			사유지
		소계	사천시	경상남도	소계	국 토 해양부	농림수산 식품부	
필 지 수	78	3	1	2	6	5	1	69
면 적(m <sup>2</sup> )	208,710	713	354	359	5,333	4,228	1,105	202,664
구성비(%)	100.0	0.4	0.2	0.2	2.5	2.0	0.5	97.1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19)

##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합 계	208,710	100.0	
산업시설용지	112,319	53.8	
공공시설용지	96,391	46.2	
유수지	2,973	1.4	
수도공급설비	2,275	1.1	
수질오염방지시설	2,053	1.0	Q = 400m <sup>3</sup> /일
주차장	2,646	1.3	
도로	26,407	12.7	
녹지용지	60,037	28.7	
공원	5,161	2.5	
녹지	54,876	26.2	

### 나. 기반시설계획

#### 1) 도로계획

##### 가)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합계	4	1,870	27,405	1	97	3,058	2	1,735	24,111	1	38	236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2	1,500	24,503	1	97	3,058	1	1,403	21,445	-	-	-
소로	2	370	2,902	-	-	-	1	332	2,666	1	38	236

※ 중로1-19호선 : 가감속차로 998m<sup>2</sup> 포함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20)

## 나)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9	20	주간선 도로	97	지방도 1002호선	중로 2-38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가감속 차로포함
기정	중로	2	38	15~17.5	보조 간선 도로	1,403	중로 2-38	중로 2-38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기정	소로	2	211	8	집산 도로	332	중로 2-38	수도공급 설비③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기정	소로	3	102	6	집산 도로	38	중로 2-38	수질오염 방지시설 ①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 2) 주차장계획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10	구암①주차장	구암리 산48-5번지	2,373	-	2,373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기 정	11	구암②주차장	구암리 산48-1번지	273	-	273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 3) 공원계획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3	구암 1공원	소공원	구암리 산49-1번지	3,934	-	3,934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기 정	4	구암 2공원	소공원	구암리 산48-1번지	1,227	-	1,227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21)

## 4) 녹지계획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16	녹지	완충녹지	구암리 318번지	5,845	-	5,845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기 정	17	녹지	완충녹지	구암리 산35-3번지	3,059	-	3,059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기 정	18	녹지	완충녹지	구암리 산48-6번지	45,972	-	45,972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 5) 상수도시설계획

### 가) 용수량

구 분	용수수요량(m <sup>3</sup> /일)	비 고
계	544.4m <sup>3</sup> /일	계획용수량 : 550m <sup>3</sup> /일
공 업 용 수	457.3m <sup>3</sup> /일	
생 활 용 수	87.1m <sup>3</sup> /일	

### 나) 수도공급설비계획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3	구암배수지	구암리 산48-6번지	2,275	-	2,275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 6) 유수지계획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1	구암저류지	저류시설	구암리 321-2번지	2,973	-	2,973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22)

## 7) 오·폐수처리계획

### 가) 오·폐수량

구 분	오·폐수량(m <sup>3</sup> /일)	비 고
계	306.5m <sup>3</sup> /일	계획오·폐수량 : 324.8m <sup>3</sup> /일
산 업 폐 수	248.4m <sup>3</sup> /일	
생 활 오 수	58.1m <sup>3</sup> /일	

### 나)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1	구암폐수 종말처리장	폐수종말 처리시설	구암리 산35-3번지	2,053	-	2,053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 8)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

### 가) 전력

구 분	전력소요예상량(천kw/일)	비 고
계	41.2천kw/일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 나) 통신

구 분	수요량(회선)	비 고
계	61회선	(주)KT와 협의하여 공급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23)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자금조달 : 사업시행자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투 자 내 역	예상투자액(백만원)		비 고
		기정	변경	
2008년	사업부지 매입	2,660	600	
	미매입부지 매입	320	-	
	토지매입 등록세 및 취득세 외	50	50	
	토목공사 설계 용역비	370	370	
	기 타 비 용	100	100	
	소 계	3,500	1,120	
2009년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비용	370	370	
	산업단지 조성 토목공사 착공비	2,480	2,480	
	기 타 비 용	100	100	
	소 계	2,950	2,950	
2010년 ~ 2012년	산업단지 조성 토목공사 기성 및 준공	21,468	15,168	
	기 타 비 용	100	700	
	소 계	21,568	15,868	
2013년	미매입부지 매입	-	1,320	
	토지매입 등록세 및 취득세 외	-	73	
	산업단지 조성 토목공사 기성 및 준공	-	6,300	
	토목공사 감리 용역비	-	200	
	기 타 비 용	-	187	
	소 계	-	8,080	
총 계		28,018	28,018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붙임1”(변경없음)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24)

## 11.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업 종	면 적(m <sup>2</sup> )	구성비(%)
계	-	112,319	100.0
제 조 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1)	49,116	43.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63,203	56.3

##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변경없음)

##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가. 토지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합 계	208,710	100.0	
산업시설용지	112,319	53.8	사업시행자 사용
공공시설용지	96,391	46.2	
유수지	2,973	1.4	사천시에 귀속
수도공급설비	2,275	1.1	사천시에 귀속
수질오염방지시설	2,053	1.0	사업시행자 사용
주차장	2,646	1.3	사업시행자 사용
도로	26,407	12.7	사천시에 귀속
녹지용지	60,037	28.7	
공원	5,161	2.5	사천시에 귀속
녹지	54,876	26.2	사천시에 귀속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25)

## 나. 시설물

구 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계획	비 고
도 로	사 면		1 식	사천시에 귀속
	L형 측구		3,012.0m	"
	RL형 측구		279.0m	"
	반중력식옹벽	H=2.0	630.0m	"
	보강토옹벽	H=1~10m	912.0m	"
상 수	KP 주철관	D100	786.0m	"
	HI-3P 수도관	D75~100	1,213.0m	"
	제 수 변	D80	3개소	"
	소화전	지상쌍구	2개소	"
우 수	우수관로	D300~D1200	3,803.5m	"
	횡단측구	300x400	6.5m	"
	우수받이		157개소	"
	철근콘크리트수로관	400C	516.0m	"
	우수맨홀		36개소	"
	U형개거		540.0m	"
	암 거		86.5m	"
오 수	오수관로	D300~D400	1,130.0m	"
	오수맨홀		32개소	"
전기	가로등주	H=10m	48주	"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26)

##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없음)

###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51,952,614.5		451,952,614.5	( )는 해면부	
		(53,688,835.0)		(53,688,835.0)		
도 시 지 역	계	91,037,773.5		91,037,773.5	( )는 해면부	
		(2,094,121.0)		(2,094,121.0)		
	주거지역	11,689,064.5		11,689,064.5		
	상업지역	1,276,471.0		1,276,471.0		
	공업 지역	소 계	10,301,976.0	증)102,740	10,404,716.0	( )는 해면부
			(1,020,829.0)		(1,020,829.0)	
		일반공업지역	9,452,925.0	증)102,740	9,555,665.0	( )는 해면부
	준공업지역	(1,020,829.0)		(1,020,829.0)		
	준공업지역	849,051.0		849,051.0		
	녹지 지역	소 계	66,696,970.0	감)102,740	66,594,230.0	
		보전녹지지역	3,408,829.0	감)56,413	3,352,416.0	
		생산녹지지역	6,897,907.0	감)13,869	6,884,038.0	
		자연녹지지역	56,390,234.0	감)32,458	56,357,776.0	
	미 지 정 (해면부)		1,073,292.0		1,073,292.0	
비 도 시 지 역	계	360,914,841.0		360,914,841.0	( )는 해면부	
		(51,594,714.0)		(51,594,714.0)		
	관리 지역	소 계	124,243,582.0		124,243,582.0	
		보전관리지역	46,895,763.0		46,895,763.0	
		생산관리지역	34,865,890.0		34,865,890.0	
		계획관리지역	42,453,370.0		42,453,370.0	
		관리지역미분류	228,559.0		228,559.0	
	농 립 지 역	170,365,827.0		170,365,827.0		
	자연환경보전지역	66,305,432.0		66,305,432.0		
	( 해 면 부 )		51,594,714.0		51,594,714.0	
미 지 정		-		-		

※ 기정은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사천시고시제2012-20호)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27)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8,710	-	208,710	100.0	
공 업 지 역	208,710	-	208,710	100.0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천구암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산48-1번지 일원	208,710	-	208,710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 다. 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08,710	100.0	
산업시설용지	112,319	53.8	
공공시설용지	96,391	46.2	
유 수 지	2,973	1.4	
수도공급설비	2,275	1.1	
수질오염방지시설	2,053	1.0	
주 차 장	2,646	1.3	
도 로	26,407	12.7	
녹 지 용 지	60,037	28.7	
공 원	5,161	2.5	
녹 지	54,876	26.2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28)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가) 도로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합계	4	1,870	27,405	1	97	3,058	2	1,735	24,111	1	38	236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2	1,500	24,503	1	97	3,058	1	1,403	21,445	-	-	-
소로	2	370	2,902	-	-	-	1	332	2,666	1	38	236

※ 중로1-19호선 : 가감속차로 998m<sup>2</sup> 포함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9	20	주간선 도로	97	지방도 1002호선	중로 2-38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가감속 차로포함
기정	중로	2	38	15~17.5	보조 간선 도로	1,403	중로 2-38	중로 2-38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기정	소로	2	211	8	집산 도로	332	중로 2-38	수도공급 설비③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기정	소로	3	102	6	집산 도로	38	중로 2-38	수질오염방지 시설①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 나) 주차장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10	구암①주차장	구암리 산48-5번지	2,373	-	2,373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기 정	11	구암②주차장	구암리 산48-1번지	273	-	273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29)

## 다)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3	구암 1공원	소공원	구암리 산49-1번지	3,934	-	3,934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기 정	4	구암 2공원	소공원	구암리 산48-1번지	1,227	-	1,227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 라)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16	녹지	완충녹지	구암리 318번지	5,845	-	5,845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기 정	17	녹지	완충녹지	구암리 산35-3번지	3,059	-	3,059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기 정	18	녹지	완충녹지	구암리 산48-6번지	45,972	-	45,972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 마)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3	구암배수지	구암리 산48-6번지	2,275	-	2,275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30)

## 바) 유수지

유수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1	구암저류지	저류시설	구암리 321-2번지	2,973	-	2,973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1	구암폐수 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 리시설	구암리 산35-3번지	2,053	-	2,053	사천시 고시 제2009-85호 2009.9.28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I	I	구암리 124-2번지 일원	6,877	분양후 획지분할
II	II	구암리 95번지 일원	30,908	분양후 획지분할
III	III	구암리 산48-1번지 일원	53,239	분양후 획지분할
IV	IV	구암리 산48-6번지 일원	21,295	분양후 획지분할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31)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I	지정용도	<input type="checkbox"/>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권장용도	<input type="checkbox"/>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건 폐 율	<input type="checkbox"/> 70%이하
		용 적 률	<input type="checkbox"/> 280%이하
		높 이	<input type="checkbox"/>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	II	지정용도	<input type="checkbox"/>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권장용도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건 폐 율	<input type="checkbox"/> 70%이하
		용 적 률	<input type="checkbox"/> 280%이하
		높 이	<input type="checkbox"/>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32)

(표 계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Ⅲ	Ⅲ	지정용도	<input type="checkbox"/>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권장용도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건 폐 율	<input type="checkbox"/> 70%이하
		용 적 륜	<input type="checkbox"/> 280%이하
		높 이	<input type="checkbox"/>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Ⅳ	Ⅳ	지정용도	<input type="checkbox"/>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권장용도	<input type="checkbox"/>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건 폐 율	<input type="checkbox"/> 70%이하
		용 적 륜	<input type="checkbox"/> 280%이하
		높 이	<input type="checkbox"/>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수도공급설비, 우수지,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법규에 의해 건축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33)

## 라. 공원조성계획(③소공원) 결정조서

### 1) 부지총괄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3,934	-	3,934	
기 정	휴양시설	구암리 산49-1번지 일원	224	-	224	
기 정	도 로	구암리 산49-1번지 일원	275	-	275	
기 정	녹 지	구암리 산49-1번지 일원	3,435	-	3,435	

### 2) 시설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면 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3,934	-	-	
기 정	휴양시설	224	-	-	
기 정	도 로	275	-	-	
기 정	녹 지	3,435	-	-	

### 3)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면적 (m <sup>2</sup> )	위 치	시설규모(m <sup>2</sup> )			비고
					건축 면적	연면 적	층수	
합 계			3,934	구암리 산49-1번지 일원	-	-	-	
휴양시설	1	휴양시설	224	구암리 산49-1번지 일원	-	-	-	
도로	2	보행자전용도로	275	구암리 산49-1번지 일원	-	-	-	
녹지	3	녹지 및 산책로	3,435	구암리 산49-1번지 일원	-	-	-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34)

## 마. 공원조성계획(④소공원) 결정조서

### 1) 부지총괄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1,227	-	1,227	
기 정	휴양시설	구암리 산48-1번지 일원	183	-	183	
기 정	도 로	구암리 산48-1번지 일원	29	-	29	
기 정	녹 지	구암리 산48-1번지 일원	1,015	-	1,015	

### 2) 시설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면 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227	-	-	
기 정	휴양시설	183	-	-	
기 정	도 로	29	-	-	
기 정	녹 지	1,015	-	-	

### 3)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면적(m <sup>2</sup> )	위 치	시설규모(m <sup>2</sup> )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1,227	구암리 산48-1번지 일원	-	-	-	
휴양 시설	1	휴양시설	183	구암리 산48-1번지 일원	-	-	-	
도로	2	보행자 전용도로	29	구암리 산48-1번지 일원	-	-	-	
녹지	3	녹 지	1,015	구암리 산48-1번지 일원	-	-	-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35)

<붙임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사천읍 구암리	산35-3	임	2,992	2,500	최정용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최성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	사천읍 구암리	산36-1	임	789	18	경상남도				
3	사천읍 구암리	산37-2	임	341	341	경상남도				
4	사천읍 구암리	산38	임	1,488	1,488	황규연	사천읍 구암리			
5	사천읍 구암리	산43-1	도	1,256	46	국(국토 해양부)				
6	사천읍 구암리	산45-3	임	6,871	6,871	사단법인 구계서원유 대관대유 계회	사천읍 구암리			
7	사천읍 구암리	산46-2	임	394	394	최도경	사천읍 구암리			
8	사천읍 구암리	산47-3	구	463	463	국(국토 해양부)				
9	사천읍 구암리	산48-4	임	71,616	14,98 2	오영옥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조수정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조용재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10	사천읍 구암리	산49-2	임	8,926	327	최추경	사천읍 구암리			
11	사천읍 구암리	75-2	전	86	86	정순석	사천읍 구암리			
12	사천읍 구암리	87	전	183	183	최인택	사천읍 구암리			
						최태경	사천읍 구암리			
13	사천읍 구암리	96	답	354	354	사천시				
14	사천읍 구암리	98	전	945	945	이용구	사천읍 구암리			
15	사천읍 구암리	99	전	499	499	이용구	사천읍 구암리			
16	사천읍 구암리	100	전	159	159	박봉계	사천읍 구암리			
17	사천읍 구암리	101	답	145	145	오천옥	사천읍 구암리			
18	사천읍 구암리	102	전	205	205	이기성	사천읍 구암리			
19	사천읍 구암리	103	답	205	205	오천옥	사천읍 구암리			
20	사천읍 구암리	104	전	162	162	박봉계	사천읍 구암리			
21	사천읍 구암리	105	전	251	251	오영구	부산 연제구 연산동			
22	사천읍 구암리	106	전	615	615	오천옥	사천읍 구암리			
23	사천읍 구암리	107	전	1,676	1,676	김광자	사천읍 구암리 원광이 안애 임대아파트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36)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24	사천읍 구암리	115	답	291	291	최진성	서울 강남구 잠실2동아파트			
25	사천읍 구암리	116	답	258	258	함태분	사천읍 구암리			
26	사천읍 구암리	117	답	608	608	최진성	서울 강남구 잠실2동아파트			
27	사천읍 구암리	118	답	165	165	박봉계	사천읍 구암리			
28	사천읍 구암리	119	전	1,603	1,603	최도경	사천읍 구암리			
29	사천읍 구암리	121	전	1,076	1,076	정들자	사천읍 구암리			
						김성우	사천읍 구암리			
						김정희	사천읍 구암리			
30	사천읍 구암리	122	전	608	608	박상남	사천읍 구암리			
31	사천읍 구암리	123	답	995	995	함태분	사천읍 구암리			
32	사천읍 구암리	124-1	전	1,015	1,015	함태분	사천읍 구암리			
33	사천읍 구암리	124-2	전	1,818	1,818	최도경	사천읍 구암리			
34	사천읍 구암리	125	전	139	139	함태분	사천읍 구암리			
35	사천읍 구암리	317	전	912	912	최진세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양아파트			
36	사천읍 구암리	318	전	1,742	1,742	오영구	부산 연제구 연상동			
37	사천읍 구암리	319	답	60	60	오천옥	사천읍 구암리			
38	사천읍 구암리	320	답	79	79	오천옥	사천읍 구암리			
39	사천읍 구암리	321-1	답	1,823	1,823	김광자	사천읍 구암리 원광이안애 임대아파트			
40	사천읍 구암리	21-2	답	1,342	1,193	오천옥	사천읍 구암리			
41	사천읍 구암리	322	답	707	707	최재경	사천읍 구암리			
42	사천읍 구암리	323	전	261	261	최재경	사천읍 구암리			
43	사천읍 구암리	24-3	임	55	55	김대순	사천읍 정의리			
44	사천읍 구암리	326	답	992	102	하영숙	사천시 동동 화신동 백빌라			
45	사천읍 구암리	1803	구	35,121	1,105	국(농림수산식품부)				
46	사천읍 구암리	1809	도	50	50	국(국토해양부)				
47	사천읍 구암리	1810	도	922	922	국(국토해양부)				
48	사천읍 구암리	1811	도	2,747	2,747	국(국토해양부)				
합 계				153,018	53,249					

○ 건축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37)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산4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나. 명 칭 : 구암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수도공급설비, 우수지, 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도시계획도로
    - ㄱ 중로1 - 19호선 : L=97m, B=20m, A=3,058㎡
    - | 중로2 - 38호선 : L=1,403m, B=15~17.5m, A=21,445㎡
    - | 소로2-211호선 : L=332m, B=8m, A=2,666㎡
    - ㄴ 소로3-102호선 : L=38m, B=6m, A=236㎡
  - 나. 주차장 : A=2,373㎡, A=273㎡
  - 다. 소공원 : A=3,934㎡, A=1,227㎡
  - 라. 녹지 : A=5,845㎡, A=3,059㎡, A=45,972㎡
  - 마. 수도공급설비 : A=2,275㎡
  - 바. 우수지 : A=2,973㎡
  -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 A=2,053㎡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201-1 목전빌딩301호
  - 가. 성 명 : (주)드림에이스테크 대표이사 김을상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착 수 일 : 2009년 9월 28일
  - 나. 준공예정일 : 당초 2012년 12월 31일  
변경 2013년 06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사천시청 공단조성과에 비치)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38)

〈붙임2〉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종로 1-19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사천읍 구암리	산 38	임	1,488	368	황규연				
2	사천읍 구암리	산 45 -3	임	6,871	79	사단법인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3	사천읍 구암리	108 -1	답	1,547	235	김을상	창원시 북면 화천리			
4	사천읍 구암리	115	답	291	176	최진성	서울 강남구 잠실2동			
5	사천읍 구암리	117	답	608	162	최진성	서울 강남구 잠실2동			
6	사천읍 구암리	118	답	165	95	박봉계	309			
7	사천읍 구암리	119	전	1,603	852	최도경	472			
8	사천읍 구암리	1810	도	922	39	국(국토해양부)				
9	사천읍 구암리	1811	도	2,747	54	국(국토해양부)				
10	사천읍 구암리	산 36 -1	임	789	120	경상남도				
11	사천읍 구암리	산 43 -1	도	1,256	30	국(국토해양부)				
12	사천읍 구암리	산 35 -2	임	3,412	69	경상남도				
13	사천읍 구암리	산 37 -1	임	321	86	경상남도				
14	사천읍 구암리	산 45 -2	임	4,445	368	경상남도				
15	사천읍 구암리	119 -1	도	83	83	경상남도				
16	사천읍 구암리	120 -5	도	783	65	경상남도				
17	사천읍 구암리	120 -6	도	177	177	경상남도				
합 계				27,508	3,058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39)

○ 종로 2-38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사천읍 구암리	산 48 -1	임	55,636	7,153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2	사천읍 구암리	산 48 -5	임	9,620	3,047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3	사천읍 구암리	산 48 -6	임	45,124	3,796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4	사천읍 구암리	산 48 -7	임	7,934	1,813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5	사천읍 구암리	산 48 -8	임	26,552	333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6	사천읍 구암리	산 49 -1	임	3,967	6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7	사천읍 구암리	89	전	417	44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외1인	창원시 명서동 201-1			
8	사천읍 구암리	90	전	1,058	29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9	사천읍 구암리	96	답	354	182	사천시				
10	사천읍 구암리	97	전	2,446	968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외1인	창원시 명서동 201-1			
11	사천읍 구암리	108 -1	답	1,547	263	김을상	창원시 북면 화천리			
12	사천읍 구암리	108 -2	답	916	588	김을상	창원시 북면 화천리			
13	사천읍 구암리	109	전	1,567	887	김을상	창원시 북면 화천리			
14	사천읍 구암리	110	답	198	28	김을상	창원시 북면 화천리			
15	사천읍 구암리	112	전	850	12	김을상	창원시 북면 화천리			
16	사천읍 구암리	113	전	288	254	김을상	창원시 북면 화천리			
17	사천읍 구암리	114	답	155	155	김을상	창원시 북면 화천리			
18	사천읍 구암리	115	답	291	94	최진성	서울 강남구 잠실2동			
19	사천읍 구암리	123	답	995	873	함태분	308-2			
20	사천읍 구암리	318	전	1,742	180	오영구	부산 연제구 연산동			
21	사천읍 구암리	320	답	79	5	오천옥	337			
22	사천읍 구암리	321 -1	답	1,823	211	김광자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23	사천읍 구암리	321 -2	답	1,342	9	오천옥	337			
24	사천읍 구암리	1803	구	35,121	15	국(농림수산식품부)				
25	사천읍 구암리	1810	도	922	96	국(국토해양부)				
26	사천읍 구암리	1811	도	2,747	404	국(국토해양부)				
합 계				203,691	21,445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40)

○ 소로 2-211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사천읍 구암리	산 48 -4	임	71,616	2,458	오영옥 외6인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2	사천읍 구암리	산 48 -7	임	7,934	208	주식회사드림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합 계				79,550	2,666					

○ 소로 3-102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사천읍 구암리	321 -1	답	1,823	212	김광자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2	사천읍 구암리	322	답	707	24	최재경	309			
합 계				2,530	236					

○ 주차장1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사천읍 구암리	산 48 -5	임	9,620	1,570	주식회사드림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2	사천읍 구암리	산 48 -7	임	7,934	803	주식회사드림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합 계				17,554	2,373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41)

## ○ 주차장1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사천읍 구암리	산 48 -1	임	55,636	273	주식회사드림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합 계				55,636	273					

## ○ 소공원3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사천읍 구암리	산 48 -4	임	71,616	114	오영옥 외6인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2	사천읍 구암리	산 48 -5	임	9,620	137	주식회사드림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3	사천읍 구암리	산 48 -7	임	7,934	167	주식회사드림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4	사천읍 구암리	산 49 -1	임	3,967	3,189	주식회사드림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5	사천읍 구암리	산 49 -2	임	8,926	327	최추경	313			
합 계				102,063	3,934					

## ○ 소공원4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사천읍 구암리	산 48 -1	임	55,636	1,227	주식회사드림에이스테크	창원시 웅남동 62-21			
합 계				55,636	1,227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42)

○ 완충녹지16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사천읍 구암리	산 48 -1	임	55,636	10	주식회사드림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2	사천읍 구암리	산 48 -5	임	9,620	2,538	주식회사드림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3	사천읍 구암리	산 49 -1	임	3,967	772	주식회사드림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4	사천읍 구암리	317	전	912	912	최진세	서울 도봉구 쌍문동			
5	사천읍 구암리	318	전	1,742	941	오영구	부산 연제구 연산동			
6	사천읍 구암리	180 3	구	35,121	672	국(농림수산식품부)				
합 계				106,998	5,845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43)

○ 완충녹지17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사천읍 구암리	산 35 -3	임	2,992	1,423	최정용 외1인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	사천읍 구암리	산 36 -1	임	789	18	경상남도				
3	사천읍 구암리	산 37 -2	임	341	184	경상남도				
4	사천읍 구암리	산 43 -1	도	1,256	46	국(국토해양부)				
5	사천읍 구암리	119	전	1,603	32	최도경	472			
6	사천읍 구암리	121	전	1,076	402	정돌자의 외 2인	334-1			
7	사천읍 구암리	122	전	608	6	박상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8	사천읍 구암리	124 -1	전	1,015	208	함태분	308-2			
9	사천읍 구암리	124 -2	전	1,818	52	최도경	472			
10	사천읍 구암리	125	전	139	35	함태분	308-2			
11	사천읍 구암리	321 -1	답	1,823	255	김광자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2	사천읍 구암리	321 -2	답	1,342	47	오천옥	337			
13	사천읍 구암리	322	답	707	126	최재경	309			
14	사천읍 구암리	323	전	261	67	최재경	309			
15	사천읍 구암리	324 -3	임	55	55	김대순	정의동			
16	사천읍 구암리	326	답	992	80	하영숙	사천시 동동 379-2			
17	사천읍 구암리	181 0	도	922	23	국(국토해양부)				
합 계				17,739	3,059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44)

○ 완충녹지18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사천읍 구암리	산 45 -3	임	6,871	1,961	사단법인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획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2	사천읍 구암리	산 46 -2	임	394	394	최도경				
3	사천읍 구암리	산 47 -5	임	2,370	1,060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4	사천읍 구암리	산 48 -1	임	55,636	2,250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5	사천읍 구암리	산 48 -4	임	71,616	7,023	오영옥 외6인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6	사천읍 구암리	산 48 -6	임	45,124	21,468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7	사천읍 구암리	산 48 -7	임	7,934	7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8	사천읍 구암리	산 48 -8	임	26,552	9,511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9	사천읍 구암리	75 -2	전	86	86	정순석	구암리			
10	사천읍 구암리	75 -3	전	879	699	김을상	창원시 북면 화천리			
11	사천읍 구암리	84	전	221	63	김을상	창원시 북면 화천리			
12	사천읍 구암리	86 -2	전	429	193	김을상	창원시 북면 화천리			
13	사천읍 구암리	87 -1	전	524	333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외1인	창원시 명서동 201-1			
14	사천읍 구암리	87	전	183	119	최인택외 1인	구암리			
15	사천읍 구암리	92	전	840	2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16	사천읍 구암리	94	전	410	292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외1인	창원시 명서동 201-1			
17	사천읍 구암리	99	전	499	97	이용구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8	사천읍 구암리	119	전	1,603	414	최도경	472			
합 계				220,568	45,972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45)

## ○ 수도공급설비3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사천읍 구암리	산 48 -4	임	71,616	1,025	오영옥 외6인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2	사천읍 구암리	산 48 -6	임	45,124	1,250	주식회사드림 에이스테크	창원시 명서동 201-1			
합 계				116,740	2,275					

## ○ 저류시설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사천읍 구암리	318	전	1,742	621	오영구	부산 연제구 연산동			
2	사천읍 구암리	319	답	60	60	오천옥	337			
3	사천읍 구암리	320	답	79	74	오천옥	337			
4	사천읍 구암리	321 -1	답	1,823	788	김광자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5	사천읍 구암리	321 -2	답	1,342	1,000	오천옥	337			
6	사천읍 구암리	322	답	707	4	최재경	309			
7	사천읍 구암리	1803	구	35,121	418	국(농림수산식품부)				
8	사천읍 구암리	1810	도	922	8	국(국토해양부)				
합 계				41,796	2,973					

# 사 천 시 공 보

제298호(246)

○ 폐수종말처리시설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사천읍 구암리	산 35 -3	임	2,992	979	최정용 외1인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	사천읍 구암리	321-1	답	1,823	221	김광자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3	사천읍 구암리	321-2	답	1,342	137	오천옥	337			
4	사천읍 구암리	322	답	707	500	최재경	309			
5	사천읍 구암리	323	전	261	194	최재경	309			
6	사천읍 구암리	326	답	992	22	하영숙	사천시 동동 379-2			
합 계				8,117	2,053					

○ 건축물조서 : 해당사항 없음